

중소기업 성실납세를 위한 세정상 지원방안 연구

-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

박주철 | 권순오 | 박하얀

2023. 12.

www.kipf.re.kr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주 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 순 오 세정연구팀 세무사

박 하 안 세정연구팀 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중소기업 세정지원 개요	3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3
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3
나. 세법상 중소기업	12
다. 기타 국제 기준	15
2.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이론적 배경	17
3.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태	19
가. 만족도	19
나. 개선 희망사항	25
다. 소결	27
I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현황	28
1. 국세청 지원 제도	28
가. 개별 컨설팅 제도	28
나. 종합 지원 제도	46
다. 기타	50
2. 기타 정부 부처 지원 제도	55
가. 마을 세무사 제도	55

나. 비즈니스지원단	56
3. 소결	62
IV.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국외 사례	68
1. 미국	68
가.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웹페이지	68
나.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프로그램 서비스	70
다.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	71
라. 현장 및 온라인 교육	72
2. 캐나다	75
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75
나. 연락 담당관 서비스	78
다. 지역사회 소득세 신고 봉사 프로그램	79
3. 호주	81
가. 국세 클리닉 프로그램(National Tax Clinic program)	81
나. 가산세 사면 프로그램(Lodgment penalty amnesty program)	82
4. 핀란드	82
5. 스웨덴	85
6. 싱가포르	87
가. 신규 기업 자가진단 키트(New Company Start-Up Kit)	87
나. ACRA-IRAS 세금신고 솔루션(ACRA-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	89
7. 소결	92
V. 시사점 및 개선 방안	97
1. 온라인 세무 교육 지원 강화	97

2. 세금 서비스 제공자 활용	98
3. 중소기업 세무행정서비스 통합 웹페이지 마련	103
4. 기타	106
가. 신규 창업자를 위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 개설	106
나. 자가진단 세정지원 서비스 검색 기능 제공	107
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벤치마킹	110
 참고문헌	 111

표 차례

〈표 II-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4
〈표 II-2〉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방법	6
〈표 II-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9
〈표 II-4〉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1
〈표 II-5〉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11
〈표 II-6〉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15
〈표 II-7〉 EU 중소기업 분류 기준	16
〈표 II-8〉 국세행정 서비스 불만족 이유	20
〈표 II-9〉 조세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	22
〈표 II-10〉 가장 도움이 된 국세행정 서비스	23
〈표 II-11〉 세무행정 및 조세지원책 정보 획득 경로	24
〈표 II-12〉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25
〈표 II-13〉 지원이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	26
〈표 III-1〉 영세사업자 지원단 지원 배제 업종	30
〈표 III-2〉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공 서비스	30
〈표 III-3〉 홈택스 및 손택스의 국선대리인 신청 메뉴	34
〈표 III-4〉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34
〈표 III-5〉 국선대리인 지원 여부에 따른 인용률	35
〈표 III-6〉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부가 혜택	37

〈표 III-7〉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비교	40
〈표 III-8〉 세금비서 이용 대상 현황	43
〈표 III-9〉 혁신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47
〈표 III-10〉 미래성장 세정지원의 자금유동성 관련 지원 내용	49
〈표 III-11〉 미래성장 세정지원의 기타 지원 혜택	50
〈표 III-12〉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제외 업종	58
〈표 III-13〉 현장클리닉 기업부담금 납부액	59
〈표 III-14〉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세무지원 관련 우수 사례	61
〈표 III-15〉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비교	64
〈표 IV-1〉 IRS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첫 페이지 구성 정리	69
〈표 IV-2〉 미국의 IRS Free File의 소득별 제공 서비스	71
〈표 IV-3〉 중소기업을 위한 캐나다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첫 페이지 구성	75
〈표 IV-4〉 세무 클리닉 이용 방식 유형	80
〈표 IV-5〉 ACRA IRAS Seamless Filing 관련 보조금	91
〈표 IV-6〉 주요 국가별 세정지원 제도 요약	94
〈표 V-1〉 세무 당국이 세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99
〈표 V-2〉 중소기업 세정지원 원스톱 사이트 구성 예시	105
〈표 V-3〉 자가진단 세정지원 서비스 검색 구상(안)	108

그림 차례

[그림 II-1] 국세행정 서비스 불만족 이유	19
[그림 II-2] 조세지원제도 경영 도움 정도	21
[그림 II-3] 조세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	22
[그림 II-4] 가장 도움이 된 국세행정 서비스	23
[그림 II-5] 세무행정 및 조세지원책 정보 획득 경로	24
[그림 II-6]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25
[그림 II-7] 지원이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	26
[그림 III-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39
[그림 III-2]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44
[그림 III-3] 세금비서 화면 구성	45
[그림 III-4]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49
[그림 III-5] Smart A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52
[그림 III-6]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 세법교실' 동영상 교육 페이지	53
[그림 III-7] 국세청 Youtube 공식 채널	54
[그림 III-8]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절차도	60
[그림 IV-1] IRS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실제 첫 페이지	70
[그림 IV-2] IRS Video Portal의 동영상 교육 자료 예시	74
[그림 IV-3] 중소기업을 위한 캐나다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실제 첫 페이지	77

[그림 IV-4] Guidance Model for Newly Started Businesses 실적 현황	84
[그림 IV-5] Verksamst.se 영문 사이트 첫 페이지	85
[그림 IV-6] Verksamst.se 영문 사이트 하위 메뉴 중 세금 관련 페이지	86
[그림 IV-7] New Company Start-Up Kit	88
[그림 IV-8] ACRA IRAS Seamless Filing 작동 도식	90
[그림 V-1] Dedicated Telephone Service 신청 페이지 I	101
[그림 V-2] Dedicated Telephone Service 신청 페이지 II	102
[그림 V-3] Dedicated Telephone Service 신청 페이지 III	102

I. 서론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룸
 - 2019년 기준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총 기업 종사자의 82.7%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¹⁾

-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의 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각종 세무행정 문제의 대응에 미흡한 바, 대기업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
 - 대기업은 재무·세무·법률 등 각 영역의 세분화된 직무 분담을 통해, 업무 효율화·전문화 달성이 가능하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각종 세무 문제에 대응이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개별 세무 문제의 대응에 취약할 수 있음
 - 특히 세무행정의 경우 세제 관련한 지식뿐 아니라, 실무상 행정처리 과정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면에 있어 더욱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한편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상 여러 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세제를 반영한 신고 등 세무행정상 지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세법상 중소기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노란우산공

1)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p. 11

제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뤄진 바 있음²⁾³⁾⁴⁾

- 하지만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구체적 세무행정 연구는 세제연구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세무행정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소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우선 다양한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세무행정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
 - 이와 더불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살펴봄
 -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지원 가능한 효율적인 세무행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에 차이가 있고 세무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역량을 가지는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소기업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행정 지원에 집중하고자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 이하이고, 가장 낮은 금융·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400억원 이하인데, 기준선에 근접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세무행정 수행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2) 장성호, 박성욱, 나형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20.

3) 김학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Vol. 237, 2016년 3월 호, 2016, p. 6

4) 박영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국회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II. 중소기업 세정지원 개요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임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함
 -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이 될 수 있음
-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해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가)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매출액 등 외형에 따른 규모 기준과 계열 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임을 규정하고 있음
-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으로 구분됨
 - 업종별 규모 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를 업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상한 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함

〈표 II-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표 II-1〉의 계속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 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 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 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가목 [별표 1]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함⁵⁾
- 주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 매출액 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표 II-2〉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 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p. 23

-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은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현행 독립성 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지분 비율, 출자 비율을 통해 계산한 평균 매출액 기준 3가지가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배제됨

-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기업만 적용하나,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③의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나)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가 신고되는 3개월간은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함⁶⁾

- 예외적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 등 소유 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음⁷⁾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다)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자금·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함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유예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기업

-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함⁸⁾

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표 II-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표 II-3〉의 계속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 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 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3]

3)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가)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 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기업만의 근로자 수입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차이가 있음

〈표 II-4〉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p. 61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됨

〈표 II-5〉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p. 62

나) 소상공인 유예기간

- 소상공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즉시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부여함
- 소상공인의 지위를 벗어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⁹⁾

-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며 소상공인 지위의 유예기간 적용 중인 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¹⁰⁾
- 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유예기간 적용)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소상공인 유예기간 적용은 1회만 부여)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므로 유예 적용 이후 규모 축소 등으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세법상 중소기업¹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 등 외형에 따른 규모 기준과 계열 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1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11)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 검색일자: 2023. 11. 15.

1) 중소기업 요건

-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으로 구분하되, 규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달리 평균 매출액이 아닌 당기 매출액을 판단 기준으로 적용함
- 중소기업 적용에 있어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됨¹²⁾
 -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과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을 의미함
- 상한 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¹³⁾
-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 현행 독립성 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지분 비율, 출자 비율을 통해 계산한 평균 매출액 기준 3가지가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
 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배제됨

2)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
 므로 「중소기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유예기간을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경우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 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표 II-6〉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가목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 자산총액 5천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가목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른 매출액 · 자산총액 5천억원
독립성 기준	· 공시대상기업제외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좌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유예 기간	·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 있는 경우	·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은 허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규모 기준 초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p. 19

다. 기타 국제 기준

- OECD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의 기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2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 OECD가 제공하는 사업 규모별 기업 자료에는 250명 미만의 직원이 종사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했으며, 중소기업을 다시 직원 10명 미만의 마이크로 기업(micro enterprises), 직원 10~49명의 소기업(small enterprises), 직원 50~249명의 중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으로 세분화함¹⁴⁾

- EU는 EU 권고사항(EU recommendation 2003/361)을 통해 직원 수 250명 미만 및 연 5천만유로 이하 매출이나 4천3백만유로 이하의 자산총액(Balance sheet total)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정의함
- EU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형규모(Medium-sized), 소형규모(Small-sized), 마이크로규모(Micro-sized)의 기업으로 분류함
- 중형기업의 경우 직원 수 50~249명 및 연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 매출 또는 1천만유로 초과 4천3백만유로 이하의 자산총액을 중형기업의 요건으로 정의함
 - 소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49명 및 연 2백만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 매출 또는 2백만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의 자산총액을 소기업의 요건으로 정의하며,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명 미만 및 연 2백만유로 이하 매출 또는 2백만유로 이하의 자산총액을 마이크로기업으로 정의함

〈표 II-7〉 EU 중소기업 분류 기준

회사 유형	직원 수		연 매출		자산총액
중기업	250명 미만	그리고	5천만유로 이하	또는	4천 3백만유로 이하
소기업	50명 미만		1천만유로 이하		1천만유로 이하
마이크로 기업	10명 미만		2백만유로 이하		2백만유로 이하

자료: EU Commission, "SME definition,"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mes/sme-definition_en, 검색일자: 2023. 11. 15.

14) OECD, "Enterprises by business size," <https://data.oecd.org/entrepreneur/enterprises-by-business-size.htm>, 검색일자: 2023. 11. 15.

2.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이론적 배경

- 중소기업의 육성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가의 의무 중 하나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세감면, 조달시장 제공, 외국인 인력고용 특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증진, 경제성장, 산업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기업생태계에서 점진적으로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근로자의 82.7%가 중소기업에서 종사함¹⁵⁾
- 중소기업은 자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데에 있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세무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역량이 부족할 수 있음
 - 대기업들은 통상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며, 복잡한 업무를 전문적 세무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아웃소싱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들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과세관청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일반적인 세무행정 지원과는 차별화된 중소기업 맞춤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방향성에 대해 OECD는 OECD 회원국의 14개 세무행정기관과 36개 세무서비스제공자(Tax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대상 세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대 사항을 제시함¹⁷⁾
 - **(조세협력비용 감소)** 조세협력비용의 감소는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생존 및 성장과 관련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준법비용(조세협력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5)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p. 11

16) OECD, *Rethinking Tax Services*, OECD publishing, 2016, p. 30

17) OECD, *Rethinking Tax Services*, OECD publishing, 2016, p. 48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조세협력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 및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사, 세무자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가 됨
- **(편의성)** 정부서비스 및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중소기업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더 큰 편의를 기대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대조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계약·지불·일반 기록 보관·급여 및 거래 등)가 더 용이해야 함
- **(실시간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빠르고 정확한 세무 관련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채널이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요구됨
- **(맞춤형 및 개인화된 서비스)** 중소기업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 직면하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이것은 과세관청이 세무서비스 제공자와 협업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폭넓은 범위의 세무서비스제공자가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수용하는 데 훨씬 적합하기 때문임
- **(다중 장치 서비스)** 모바일 컴퓨팅의 대규모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과세관청과 접촉 시 정보 및 서비스 두 가지 모두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선호함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제품과 플랫폼에 맞는, 여러 서비스가 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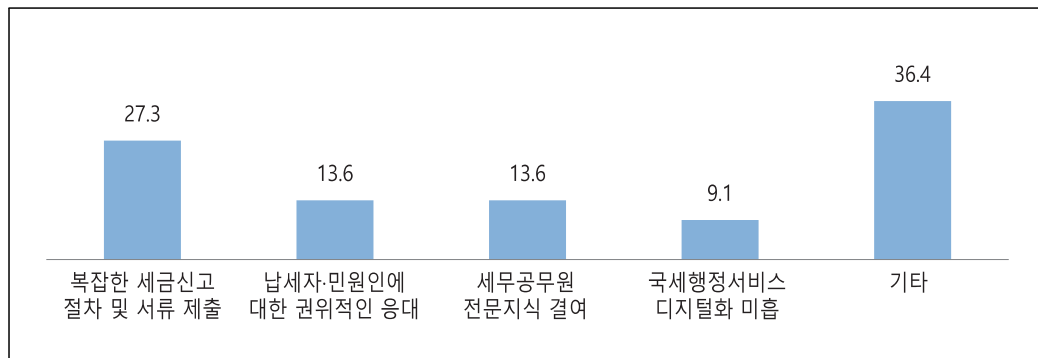
3.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태¹⁸⁾

가. 만족도

- 현재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67.2%(매우 만족 11.2% + 대체로 만족 56.0%)에 이릅니다.
- 국세 행정서비스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36.4%) 의견이 높았는데 기타에는 '전화 연결 지연', '사이트 접속 지연'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27.3%) 비율이 높았습니다.
- 불만족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타'(47.8%)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기타 의견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대행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II-1] 국세행정 서비스 불만족 이유

(base: 국 행정서비스 불만족 응답한 기업 n=22,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0

18) 이하는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II-8〉 국세행정 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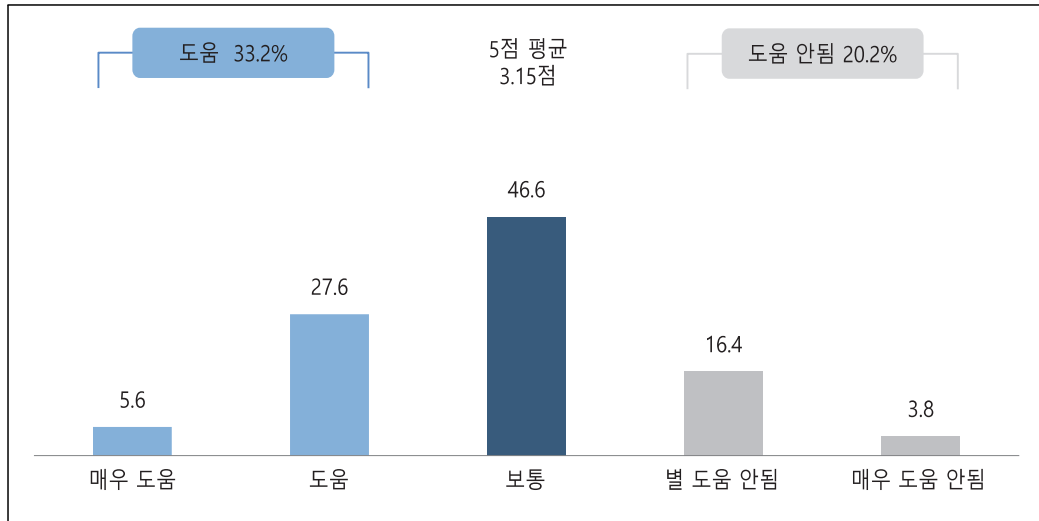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	납세자· 민원인에 대한 권위적인 응대	세무공무원 전문지식 결여	국세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미흡	기타	
전 체	(22)	27.3	13.6	13.6	9.1	36.4	
소재지	수도권	(12)	25.0	16.7	25.0	-	33.3
	비수도권	(10)	30.0	10.0	-	20.0	40.0
종업원 수	50인 미만	(12)	16.7	16.7	16.7	-	50.0
	50인 이상	(10)	40.0	10.0	10.0	20.0	20.0
매출액	100억원 미만	(10)	40.0	-	-	20.0	40.0
	100억~200억원 미만	(7)	28.6	28.6	28.6	-	14.3
	200억원 이상	(5)	-	20.0	20.0	-	60.0
업종	제조업	(15)	33.3	13.3	13.3	-	40.0
	비제조업	(7)	14.3	14.3	14.3	28.6	28.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0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3.2%(매우 도움 5.6% + 도움 27.6%)이며, 5점 만점 평균 3.15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함
-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3.2%(매우 도움 8.4% + 도움 34.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매출액이 높을수록 조세지원제도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II-2] 조세지원제도 경영 도움 정도

(base: 전체 n=500,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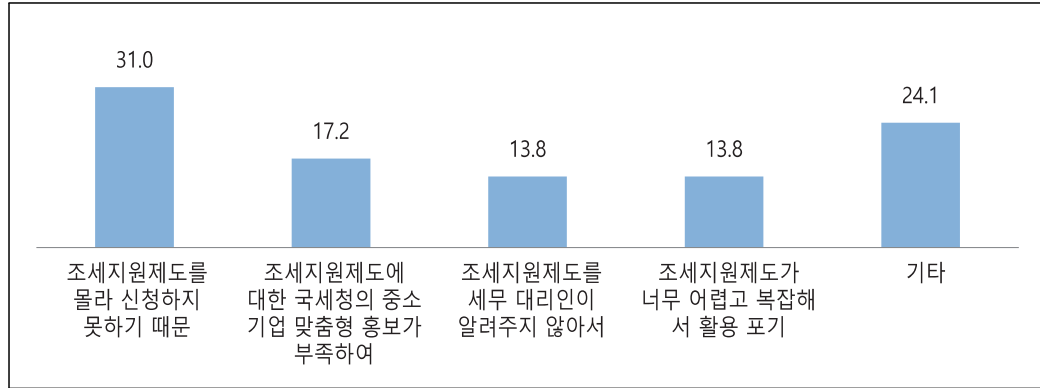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11

-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이며, 그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규모가 작음’(21.8%), ‘납부할 세금이 적어 조세지원 혜택이 작기 때문’(14.9%) 순으로 이어짐
-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조세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31.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종업원 수 50인 이상, 매출액 100억~200억원 미만 기업은 ‘조세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았음
 - 비수도권,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0% 이상으로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II-3] 조세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

(base: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업 n=58,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14

<표 II-9> 조세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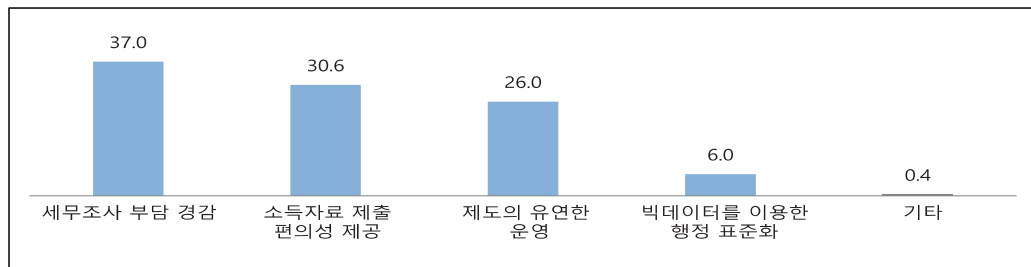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조세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가 부족하여	조세 지원제도를 세무 대리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조세 지원제도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활용 포기	기타	
전 체	(58)	31.0	17.2	13.8	13.8	24.1	
소재지	수도권	(37)	32.4	13.5	16.2	13.5	24.3
	비수도권	(21)	28.6	23.8	9.5	14.3	23.8
종업원 수	50인 미만	(32)	18.8	25.0	15.6	15.6	25.0
	50인 이상	(26)	46.2	7.7	11.5	11.5	23.1
매출액	100억원 미만	(37)	27.0	18.9	13.5	13.5	27.0
	100억-200억원 미만	(12)	41.7	16.7	16.7	16.7	8.3
	200억원 이상	(9)	33.3	11.1	11.1	11.1	33.3
업종	제조업	(41)	29.3	19.5	19.5	12.2	19.5
	비제조업	(17)	35.3	11.8	-	17.6	35.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14

- 한편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국세행정 서비스는 ‘세무조사 부담 경감’(37.0%)이며, 이어서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됨
- 매출액 100억~200억원 미만 기업은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8.9%) 도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반면,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은 ‘제도의 유연한 운영’(35.8%)을 1순위로 답변함

[그림 II-4] 가장 도움이 된 국세행정 서비스

(전체 n=500,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3

<표 II-10> 가장 도움이 된 국세행정 서비스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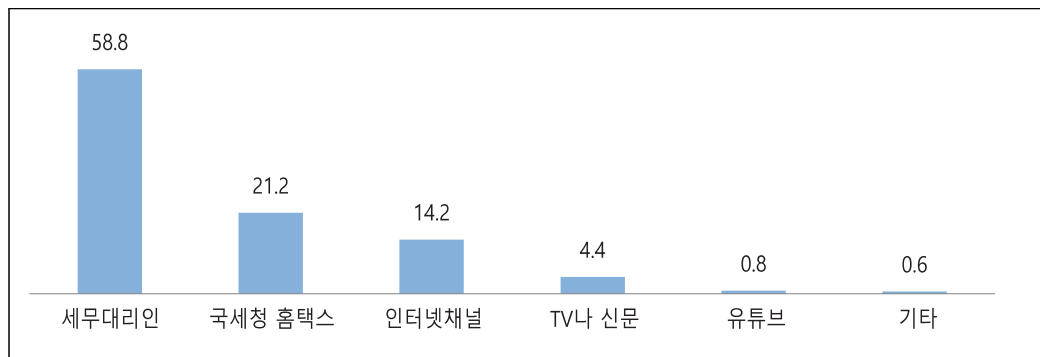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세무조사 부담 경감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	제도의 유연한 운영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 표준화	기타	
전 체	(500)	37.0	30.6	26.0	6.0	0.4	
소재지	수도권	(250)	32.4	32.4	27.6	7.2	0.4
	비수도권	(250)	41.6	28.8	24.4	4.8	0.4
종업원 수	50인 미만	(250)	40.0	28.8	27.2	3.6	0.4
	50인 이상	(250)	34.0	32.4	24.8	8.4	0.4
매출액	100억원 미만	(297)	40.1	31.0	22.6	5.7	0.7
	100억-200억원 미만	(108)	30.6	38.9	26.9	3.7	-
	200억원 이상	(95)	34.7	20.0	35.8	9.5	-
업종	제조업	(350)	38.9	32.3	24.3	4.3	0.3
	비제조업	(150)	32.7	26.7	30.0	10.0	0.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3

-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나 조세지원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세무대리인’(58.8%) 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 순으로 이어짐
- 수도권 소재 기업과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은 ‘국세청 홈택스’ 응답이 24%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5] 세무행정 및 조세지원책 정보 획득 경로

(전체 n=500,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9

<표 II-11> 세무행정 및 조세지원책 정보 획득 경로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세무 대리인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채널	TV나 신문	유튜브	기타	
전 체	(500)	58.8	21.2	14.2	4.4	0.8	0.6	
소재지	수도권	(250)	51.2	24.4	15.2	7.6	1.2	0.4
	비수도권	(250)	66.4	18.0	13.2	1.2	0.4	0.8
종업원 수	50인 미만	(250)	64.0	22.0	9.6	2.4	1.2	0.8
	50인 이상	(250)	53.6	20.4	18.8	6.4	0.4	0.4
매출액	100억원 미만	(297)	63.0	19.9	12.1	3.7	0.7	0.7
	100억-200억원 미만	(108)	53.7	22.2	16.7	5.6	1.9	-
	200억원 이상	(95)	51.6	24.2	17.9	5.3	-	1.1
업종	제조업	(350)	60.9	20.3	12.9	4.6	0.9	0.6
	비제조업	(150)	54.0	23.3	17.3	4.0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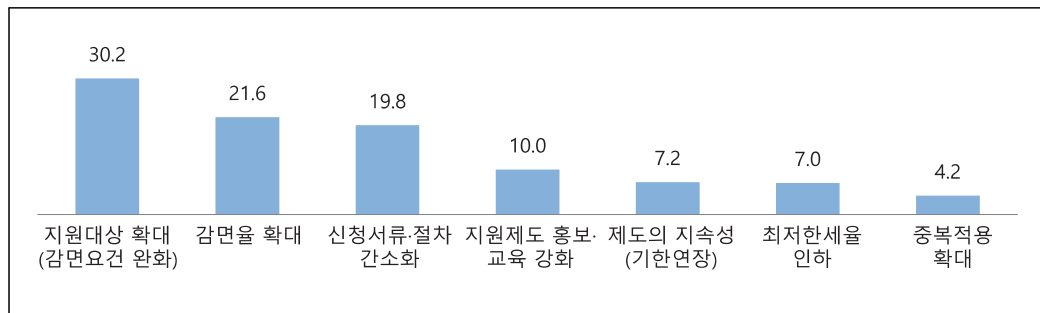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9

나. 개선 희망사항

□ 중소기업이 답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지원대상 확대’(30.2%)이며, 이어서 ‘감면율 확대’(21.6%), ‘신청서류·절차 간소화’(19.8%), ‘지원제도 홍보·교육 강화’(10.0%) 순으로 조사됨

[그림 II-6]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base: 전체 n=500,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예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24

<표 II-12>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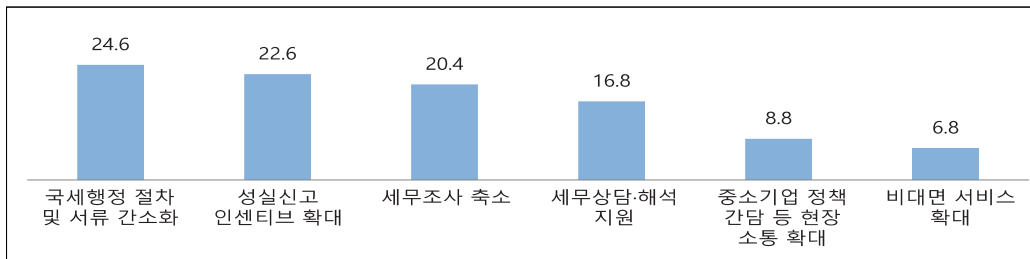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완화)	감면율 확대	신청서류·절차 간소화	지원제도 홍보·교육 강화	제도의 지속성 (기한연장)	최저한세율 인하	중복적용 확대	
전체	(500)	30.2	21.6	19.8	10.0	7.2	7.0	4.2	
소재지	수도권	(250)	30.0	22.0	19.2	10.4	6.4	7.6	4.4
	비수도권	(250)	30.4	21.2	20.4	9.6	8.0	6.4	4.0
종업원 수	50인 미만	(250)	32.8	21.2	15.2	9.2	9.6	8.8	3.2
	50인 이상	(250)	27.6	22.0	24.4	10.8	4.8	5.2	5.2
매출액	100억원 미만	(297)	30.0	21.2	21.9	10.1	7.7	5.4	3.7
	100억~200억원 미만	(108)	28.7	24.1	17.6	10.2	7.4	8.3	3.7
	200억원 이상	(95)	32.6	20.0	15.8	9.5	5.3	10.5	6.3
업종	제조업	(350)	31.7	19.1	19.7	10.0	6.9	6.9	5.7
	비제조업	(150)	26.7	27.3	20.0	10.0	8.0	7.3	0.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예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24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이며, 다음은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 ‘세무상담·해석 지원’(16.8%) 순으로 이어짐
-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6.4%)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과 비제조업은 ‘세무조사 축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함

[그림 II-7] 지원이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

(전체 n=500,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4

<표 II-13> 지원이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세무조사 축소	세무상담·해석 지원	중소기업 정책간담 등 현장소통 확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전 체	(500)	24.6	22.6	20.4	16.8	8.8	6.8	
소재지	수도권	(250)	25.2	24.0	18.8	16.8	11.2	4.0
	비수도권	(250)	24.0	21.2	22.0	16.8	6.4	9.6
종업원 수	50인 미만	(250)	24.0	26.4	19.2	14.0	8.8	7.6
	50인 이상	(250)	25.2	18.8	21.6	19.6	8.8	6.0
매출액	100억원 미만	(297)	25.3	23.2	18.9	16.8	8.8	7.1
	100억~200억원 미만	(108)	30.6	21.3	18.5	18.5	6.5	4.6
	200억원 이상	(95)	15.8	22.1	27.4	14.7	11.6	8.4
업종	제조업	(350)	25.4	22.6	19.1	16.9	10.0	6.0
	비제조업	(150)	22.7	22.7	23.3	16.7	6.0	8.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p. 34

다. 소결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는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면 소득자료 제출의 편의성과 제도의 유연한 운영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도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꾀는 것과 같이 여전히 행정적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조세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로 과반의 중소기업이 지원 규모 또는 그 지원의 실효성이 아닌 것으로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이유로 납세자가 그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조세 지원제도 면에서도 세무행정상 개선점이 필요함
-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나 조세지원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세무대리인으로 응답하는 등 세무행정상 세무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세행정 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한 것이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로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세무대리인과의 연계 확대로 이러한 불만 또한 완화할 수 있음

Ⅲ.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현황

1. 국세청 지원 제도

가. 개별 컨설팅 제도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2020년 7월 시작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이 개편된 제도로, 현재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 또한 중소기업 중 영세납세자 지원 컨설팅 제도의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인 경우 당해 제도의 지원 대상 역시 될 수 있으며, 관련 제도에는 ‘영세납세자 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등이 있음

1) 영세납세자 컨설팅 지원

가)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제도¹⁹⁾²⁰⁾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선임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 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 주기별로 맞춤형 세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

19) 납세자권익24,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검색일자: 2023. 11. 30.

20) 국세청,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보도참고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2841>, 검색일자: 2023. 11. 30.

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장에 규정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 칭하며, 세무서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총괄하에 외부 세무대리인인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와 납세자보호실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구성함²¹⁾
 - 지원단의 인원은 세무서의 규모에 따라 4~10명으로 이루어지며, 세무서 담당 직원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의 주무관을 선임함
-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의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²²⁾ 각 협회의 추천으로 선임되어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 활동에 참여함
 - 다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²³⁾
- 개인사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이 됨
 - 이때 영세 중소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의 비상장 및 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이 이에 해당함
 - 또한 소비성 서비스업 유통과정 문란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별도 관리 필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됨

2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69호, 2023. 5. 22.) 제117조 제2항

2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69호, 2023. 5. 22.) 제119조 제1항

2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69호, 2023. 5. 22.) 제117조 제4항

〈표 III-1〉 영세사업자 지원단 지원 배제 업종

구분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법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 금지금 제조·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과표양성화 등 별도 관리 필요 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자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69호, 2023. 5. 22.) 제102조 [별표1]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사업주기에 맞추어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로부터 무료 세무 자문과 창업자 및 폐업자 멘토링을 제공하며, 세무자문 서비스 관련 내용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무 자문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하여 제공되며, 자산의 이전 및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 사업 단계에 따라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I-2〉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공 서비스

사업주기	제공 서비스	내용
창업단계	창업자 멘토링	- 개인 창업자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
사업 성장단계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사업자 등록, 장부의 비치 및 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 홈택스 가입 및 이용 절차를 비롯한 신고 안내, 법률 자문 등 신고 도움(신고 대리 제외) - 각종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 요령을 비롯한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 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표 Ⅲ-2〉의 계속

사업주기	제공 서비스	내용
폐업단계	폐업자 멘토링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

자료: 납세자권익24,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검색일자: 2023. 11. 30. 내용 저자 정리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홈택스 접속,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한 전화 문의 또한 가능함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 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고,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 시에도 지원 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²⁴⁾
 -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음²⁵⁾
 - 우편의 경우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서²⁶⁾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으며, 인근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혹은 세원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음
 - 또한 유선전화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번호(1577-0070)에 연락 시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24)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2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26)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나) 국선대리인 지원제도²⁷⁾²⁸⁾

- 국선대리인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 제도는 2014년 3월 3일 시작되었으며, 세무서 및 지방청, 국세청에서 관할에 해당하는 불복 청구를 나누어 각각 담당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²⁹⁾ 5천만원 이하에 소유 재산가액³⁰⁾이 5억원 이하여야 함
 - 이때 법인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같은 재산제세 또한 대상 세목에서 제외됨
 - 청구세액 기준은 제도 시작 당시인 2014년 3월 1천만원 이하에서, 2018년 3천만원 이하, 2023년 2월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
 -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에서는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함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대표번호 126-3)을 통해 상세한 문의가 가능함
-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에 참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각급 세무관서 별로 위촉하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와 관련한 법령 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적정인원을 국선대리

27) 납세자권익24,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62&cntntsId=8293, 검색일자: 2023. 11. 30.

28) 국세청,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5910>, 검색일자: 2023. 11. 30.

29)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액

30)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함(「국세기본법 시행령」 48조의2 제2항 제2호)

인으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³¹⁾

- 위촉된 대리인 명단은 각 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으로 구성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음
 - 무보수의 지식 기부인 점을 고려하여, 제도 출발 당시 국선 세무대리인 1인의 연간 불복청구 처리 건수를 4건 이내로 배당할 것을 계획한 바 있음³²⁾
 - 또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0조에 근거하여 해당 세무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후에는 국세심사위원회와 같은 위원 위촉 시 우대함
-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은 불복청구 전과 후 모두 가능하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³³⁾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타 행정심판기관들과는 달리 불복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지원이 가능한 사전신청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불복 청구 전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여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영세납세자가 불복 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불복 청구 후 세무 관서에서 청구 세액을 비롯한 요건들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서식을 납세자에게 송부함
 -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불복 청구 전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함

3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474호, 2021. 11. 15., 일부개정) 제75조

32) 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2732>, 검색일자: 2023. 11. 30.

3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

〈표 Ⅲ-3〉 홈택스 및 손택스의 국선대리인 신청 메뉴

분류	신청 메뉴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 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자료: 국세청,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보도자료, p. 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5910>, 검색일자: 2023. 11. 30.
그래프 값 저자 발췌

- 2014년 제도 시행 후 2023년 상반기까지 3,427건의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 대리 업무를 지원했으며, 세무대리인이 없이 진행한 불복 청구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여줌
-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이용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2023년 상반기 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174건에서 23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4〉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단위: 건)

지원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 지원 건수 (상반기)	...	256 (116)	237 (108)	413 (184)	396 (163)	415 (174)	- (235)
누적 지원 건수	...	1,731	1,968	2,381	2,777	3,192	3,427

자료: 국세청,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보도자료, p. 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5910>, 검색일자: 2023. 11. 30.
그래프 값 저자 발췌

- 또한 불복 청구 시 인용률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가 미선임 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선임 시 인용률이 20.4%로, 미선임 시의 인용률인 3.5%에 비해 약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 국선대리인 지원 여부에 따른 인용률

(단위: %)

지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선대리인 선임 건	21.0	22.9	21.0	17.0	20.3	20.4
국선대리인 미선임 건	10.3	7.5	8.6	8.1	5.3	3.4

자료: 국세청,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보도자료, p. 1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5910>, 검색일자: 2023. 11. 30.

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가) 일반 세무 컨설팅

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³⁴⁾³⁵⁾

- 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큰 법인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개편 및 대체되는 과정임
-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이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임³⁶⁾
- 신청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 중소기업이나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외 기타 우선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음

34) 국세청, 「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0. 4. 12.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901>, 검색일자: 2023. 11. 30.

35) 국세청 블로그,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Q&A로 짚어드려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11192&memberNo=4795084&vType=VERTICAL>, 검색일자: 2023. 11. 30.

36)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462호) 제7조 제1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 (3순위)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 (4순위)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 (5순위) 내부 세무 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자료: 국세청, 「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0. 4. 12.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901>, 검색일자: 2023. 11. 30.

- 세무 컨설팅 지원 기간은 수입 금액 1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의 경우 1년,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경우 2년임³⁷⁾
-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신고 및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정기 세무컨설팅을 연간 1회 실시하며, 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컨설팅 진행이 가능함
 - 컨설팅을 담당하는 국세청 전담팀이 구성되며, 해당 전담팀이 제시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세무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함
 - 이와 함께 세법상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함
 - 아울러 기업이 세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자율 의사이며 미공개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공개하지 않은 세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컨설팅 협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컨설팅 대상이 되는 대상 연도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연도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연도에 대해서도 가능함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컨설팅 외에도 다양한 세무행정상 혜택이 제공됨
 - 국세청 전담팀을 통해 납세서비스 및 R&D 사전 심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담팀의 컨설팅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소 신고 가산세 역시 면제됨

37)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462호) 제21조 제1항

- 또한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 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성실신고 검증은 대상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해 간편조사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짐

〈표 Ⅲ-6〉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부가 혜택

혜택	내용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 컨설팅 수행 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하여 공제 가능 여부까지 사전에 확인 가능
납세서비스 일원화	-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와 같은 세원관리 업무를 전담팀에서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전담팀의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 처분되어 과소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가산세 면제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 성실신고 검증 후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0. 4. 12. p. 6,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901>, 검색일자: 2023. 11. 30. 내용 저자 정리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이전에는 2009년부터 성실납세협약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신청 대상은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 5백억원 미만 법인(1만 1천개)에서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3만 3천개)으로 확대됨
 -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 중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성실납세협약의 협약기간 3년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협약 종료 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흡수하고자 하였음
 - 선정 심사 기준 또한 내부 세무통제 기준 및 사업의 계속성과 같은 요건이 제외되어 중소기업의 법인과 신규 법인 또한 신청이 가능해짐
 - 성장가능성이 큰 혁신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함

- 또한 성실신고 검증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킴

②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³⁸⁾³⁹⁾

□ 중소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한 제도로, 국세청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2022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인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혜택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과 동일함

-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납세서비스 일원화,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면제, 성실신고 간편 검증(4~5일) 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혜택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동일하게 제공됨

- 기업들이 기존의 세무컨설팅을 세무 간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2년 6월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이 큰 조세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짐

-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제출 자료나 공제 및 감면 세액의 계산을 관할 지방국세청에 문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함

- 세액 공제 및 감면과 관련되는 특정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해당 의사결정을 한 날의 익월 말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38)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 검색일자: 2023.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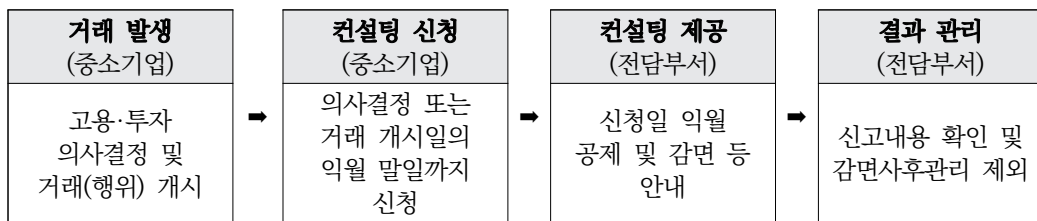
39) 국세청,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2. 7. 2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06808>, 검색일자: 2023. 11. 30.

우편 송부 및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신청 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 ▶ 신청

- 관할 지방청의 법인세 과장은 기업이 컨설팅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함
-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 전 신청할 수 있음

[그림 Ⅲ-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자료: 국세청,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2. 7. 25. p. 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06808>, 검색일자: 2023. 11. 30.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승계한 제도로 대상 및 혜택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지원 범위와 신청 및 컨설팅 방법 등에서는 차이가 존재함
- 기존 제도에서는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 중 내부 기준에 따라 일부 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협약 기간 동안 정기 혹은 수시 컨설팅을 제공하였음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거래 또는 행위 개시나 의사결정 개시 시점에 수시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신청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컨설팅 결과 역시 신청일의 익월 말까지 서면 통지됨
-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법인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음

〈표 III-7〉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비교

구분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개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후 정기 및 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해결	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	공제·감면 가능 여부 및 금액을 사전 확인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및 투자 유인
최초 시행	2009년	2020년 7월	2022년 8월
신청대상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법인 중 선정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모든 중소기업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동일	동일
지원 범위	법인세	법인이 납부하는 전 세목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위주
협약기간	갱신 가능한 3년	1~2년(갱신 불가)	별도 협약 없음
신청방법 및 기간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매년 7~9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매년 7~9월)	고용·투자 등 사유 발생 또는 경정청구 전
선정기준	내부 세무통제 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신규 및 결손 법인도 선정 가능)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 중소기업 전체
세무진단	정기 세무진단 연 1회(3~10일) 법인 요청에 따라 수시 진단 실시	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3일) 기업 요청에 따라 수시 컨설팅 실시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컨설팅 내용 서면 제공
혜택	의무 성실신고 검증(3~10일)을 통해 성실납세 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납세서비스 일원화,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면제, 성실신고 간편 검증(4~5일) 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동일

자료: 국세청, 「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보도참고자료, 붙임2, 2020. 4. 12.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901>, 검색일자: 2023. 11. 30; 국세청,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2. 7. 25, p. 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06808> 검색일자: 2023. 11. 30.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정리

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⁴⁰⁾

- 최근 창업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가업 승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충분한 컨설팅이나 정보 제공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2년 9월부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함
 -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과 사전 및 사후 요건 충족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법령상 업종 및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대표이사가 ①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 가업 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신청 대상임
 - 중소기업 기준은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에 따른 업종 범위,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500억원 이하,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 기업이나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선정 우선 순위로 두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또한 선정 시 우대 대상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가업 상속 및 가업 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자료: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95&cntntsId=239011>, 검색일자: 2023. 12. 28.

40) 국세청,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보도자료, 2022. 6. 2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06081>, 검색일자: 2023. 11. 30.

- 1년에 1회 국세청이 공고하는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은 7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면 심사 후 같은 해 8월 31일에 선정 결과를 통보함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으로 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희망 시 1년 연장이 허용됨
 - 1회 이상의 정기 컨설팅과 함께 기업 요청에 따른 수시 컨설팅을 진행함
 - 지방청 대면상담과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사항을 안내함
 - 이때 기업 대표자의 주소지와 본점 소재지가 원거리인 경우 서면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함
 - 또한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정 사유와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 판단 의견을 4주 이내에 제시함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변경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해석의 변경을 검토함
 - 실제로 2022년 5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경영을 해야만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를 10년 이상 경영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음
 - 이밖에도 가업승계 관련 서면 질의 제출 시 최우선 처리함

3) 세금비서 서비스⁴¹⁾

- 국세청은 2023년 1월부터 대화 방식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세금 신고를 처리

41) 국세청,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023. 12. 31.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9921>, 검색일자: 2023. 12. 31.

할 수 있는 AI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돕고 있음

-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자동으로 채워지며, 납세자가 현금 매출과 같은 일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임
- 이용 대상은 2023년 1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시작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점차 확대되는 중에 있음
 - 2024년 1월 현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 이용 대상 범위가 확대됨

〈표 Ⅲ-8〉 세금비서 이용 대상 현황

제공 시작	이용 대상	대상 인원
'23. 1. 16.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최초 도입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약 66만명
'23. 7. 12.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65만명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35만명	약 100만명
'23. 12. 23.	③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과세 대상	약 24만명 ('22년 신고 기준)
'24. 1. 12.	④ 간이·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명	약 165만명

자료: 국세청,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023. 12. 31. p. 2,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9921>, 검색일자: 2023. 12. 31.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혹은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신고 시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여부 확인을 하며,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음
- 홈택스 내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III-2] 내 ①번 박스와 같은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 팝업이 나타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또한 조회가 완료되면 [그림 III-2] 내 ②번 박스의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바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그림 III-2]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자료: 국세청,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023. 12. 31. p. 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9921>, 검색일자: 2023. 12. 31.

- 세금비서는 신고 진행 시 화면을 2개로 분리하여 좌측에 신고서 서식을, 우측에 대화형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세금비서 화면을 배치하여 신고를 진행함
- 우측의 세금비서 화면에 제시되는 질문을 순차적으로 답변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세금비서에서 작성 중인 신고서 항목은 [그림 Ⅲ-3]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좌측의 신고서 서식 화면에서 붉은색 점선 박스로 표시됨
- 어려운 세제 관련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는 미리 채우거나 납세자의 확인만으로 자동 작성됨

[그림 Ⅲ-3] 세금비서 화면 구성

■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첫 화면

113-16- 계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부가세 신고 요령 문의 피해보기

세금비서 이용방법
세금비서 나가기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작성(수정)하기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신고구분	2023년 2기	이 예정	세 확정	
신고대상기간	2023-07-01	-	2023-12-19	
사업자등록번호	113-16-71589	확인	※ 확인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자	2005-09-01			

사업자세부사항

성명(법인명)	성명(대표자)	수감고
법인(주민등록번호)	570224 --	
사업장전화번호	502 - 579 -	사업자전화번호 163 - 58 -
휴대전화번호	010 - 9902 -	전자우편주소 13***** @ daum.net
우편번호	08380 주소검색	※ 사업장 주소는 사업장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 1106호(구로동, 예이강애광플러너지5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 예이강애광플러너지5막 1106호	
업종코드	701201 조희	업태 부동산업 품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임포, 자기용)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안녕하세요. 신고를 도와드리는 「**세금비서**」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따라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화면에 오셨습니다. 세금비서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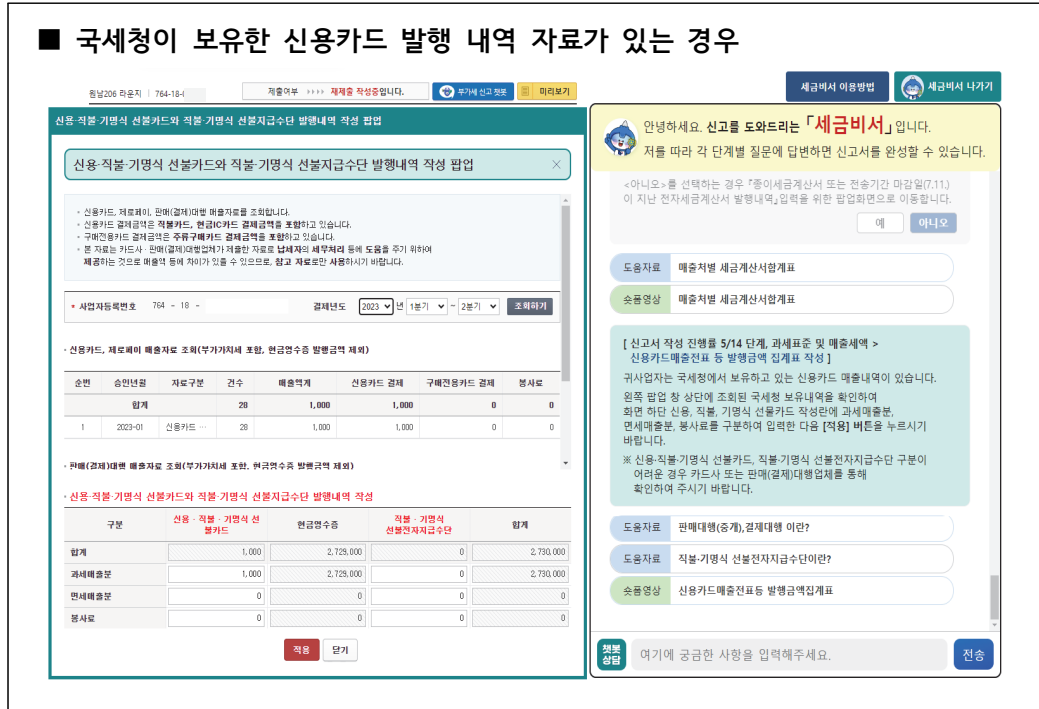
※ 세금비서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서식을 직접 작성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정기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바로가기

세무상담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전송

[그림 III-3]의 계속



자료: 국세청,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023. 12. 31. pp. 4~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9921>, 검색일자: 2023. 12. 31.

나. 종합 지원 제도

1) 혁신성장 세정지원(2018년)42)43)

□ 2018년 8월 국세청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을 혁신 성장 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업들이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운영에

42) 국세청, 「혁신성장 세정지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5740&cntntsId=109138>, 검색일자: 2023. 11. 30

43) 국세청,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3&nttSn=74612>, 검색일자: 2023. 11. 30.

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세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함

- 혁신성장 기업은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쟁력 높은 기업을 의미함

〈표 Ⅲ-9〉 혁신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대상 기업	세부 조건
혁신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설립 후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상시 근로자 인원을 전년 대비 2%(혹은 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AI나 드론, 핀테크와 같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우수한 급여, 복지혜택, 근로시간 등으로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

자료: 국세청,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p. 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3&nttSn=74612>, 검색일자: 2023. 11. 30.

- 혁신성장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비롯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이 제공됨
 - 고용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키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2%,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의 기업은 4%의 고용 인원 증가 계획이 있어야 함
 -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일정 규모 이하 성실중소기업은 매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제외됨
 - 이밖에도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신속한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항의 ‘미래성장 세정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함

- 또한 전담 창구 및 거점세무소 등을 통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법 교실 및 홈택스 상담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업의 세무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전국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에 혁신성장기업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제 및 세정상 지원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
- 4차 산업 관련 혁신성장 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세무서를 혁신성장 거점 세무서로 지정하여, 특성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건의사항 수집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자 함
- 현장 세법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단체 요청 시 사업자 및 협회 회원 대상 맞춤형 출장강좌를 실시함
- 홈택스에서 혁신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요청한 상담 내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빠르게 회신함

2) 미래성장 세정지원(2023)⁴⁴⁾

- 복합적인 경제 위기하에 수출 증대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8월 10일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에서 대상 및 지원을 보다 확대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을 발표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 및 각 지방청과 133개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함
- 기존 혁신성장 기업에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도임

44) 이하의 내용은 국세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https://www.nts.go.kr/comm/nnttFileDownload.do?fileKey=362fb512927ddee87f2b284e6f5a8e8d>, 검색일자: 2023. 11. 30. 참조함

[그림 Ⅲ-4]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자료: 국세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p. 4,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362fb512927ddee87f2b284e6f5a8e8d>, 검색일자: 2023. 11. 30.

- 미래성장 세정지원에서는 혁신성장 세정지원에서 이루어지던 자금유동성 관련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세정 지원 혜택과 맞춤형 세무상담이 제공됨
- 자금유동성과 관련하여 혁신성장 세정지원에서 이루어지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에 더하여 압류 및 매각 유예의 혜택까지 제공됨

<표 Ⅲ-10> 미래성장 세정지원의 자금유동성 관련 지원 내용

항목	세부 지원 내용
납부기한 연장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신청 시 최대 1년 범위 내 승인
경정청구 우선 처리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기한 단축(기존 2개월 → 1개월)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신고기한 당일 말일 까지 지급

자료: 국세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p. 6,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362fb512927ddee87f2b284e6f5a8e8d>, 검색일자: 2023. 11. 30.

- 이밖에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세무검증 부담 축소, 맞춤형 세무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

〈표 Ⅲ-11〉 미래성장 세정지원의 기타 지원 혜택

항목	세부 지원 내용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R&D 세액공제 신청 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해당 심사 신청 시 우선 처리
세무검증 부담 축소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법인세,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서 제외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안내 이메일 발송

자료: 국세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pp. 7~9,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362fb512927ddee87f2b284e6f5a8e8d>, 검색일자: 2023. 11. 30.
내용 저자 정리

- 수출 중소기업 및 신산업 중소기업에 홈택스 내 전용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업종 전환이나 주식 양도, 고용과 같은 기업의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이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함

다. 기타

1) 법인세 신고서 무료 작성 프로그램(Smart A)⁴⁵⁾

- 국세청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법인세 신고를 돕기 위해, 법인세 신고 시기에 맞추어 법인세 신고서 무료 작성 프로그램인 Smart A를 매년 홈택스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음
- Smart A는 매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며, 본 프로그램으로 신고서 작성 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음

45)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 법인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Smart A) 사용자 매뉴얼」,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12. 28.

- 작성 프로그램에서 회계연도(사업연도), 사업자번호, 주 업종코드 등 법인의 기초정보 등을 입력하여 회사를 등록한 후 사용 가능함

- Smart A에서는 [그림 III-5] 상단 탭에서 볼 수 있듯이, ① 기초사항 검토 ② 소득금액/특별/감가상각 ③ 세액계산 신고/조특법 관련 서식 ④ 비영리/공익/성실법인 ⑤ 전자신고/일괄 출력 ⑥ 시스템 관리(데이터 백업 및 복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액계산 신고/조특법 관련 서식’ 탭 내에서 필요한 서식을 클릭하거나, ‘기초사항 검토’ 탭 내 ‘작성순서/flow chart(2)’에서 더블 클릭 시 각 서식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음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세액을 확인한 뒤 전자신고용 변환파일을 생성하여, 신고 데이터 오류 검증 후 홈택스 바로가기로 연결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음

[그림 III-5] Smart A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자료: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 법인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Smart A) 사용자 매뉴얼」, p. 2,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12. 28.

2) 납세자 세법교실

□ 중소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나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국세교육원 공무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사이트를 통해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역시 세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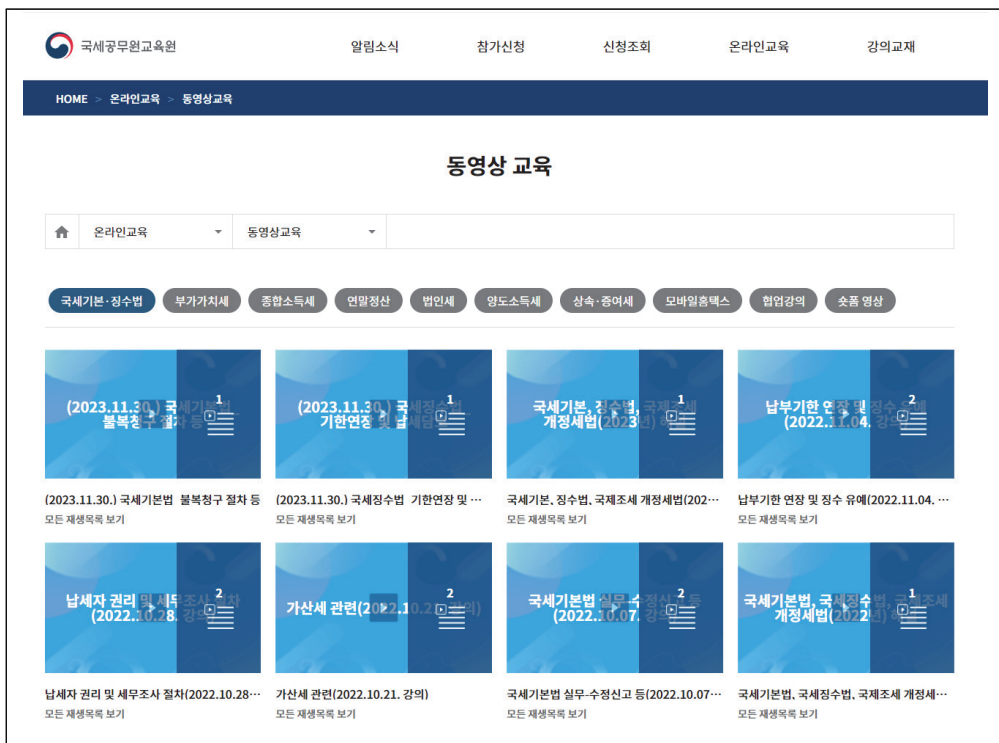
○ 납세자 세법교실은 세무 관련 현장 및 온라인 강의를 마련하고 사이트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이를 안내함

○ 또한 별도 항목을 통해 [그림 III-6]과 같이 상시 접속 가능한 동영상 강의 역시

제공하고 있음

- 동영상 강의는 각 세목에 대해 세법 관련 기초 사항부터 실무 내용까지 다루며, 강의 교재를 PDF 파일로 함께 업로드하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와 같은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까지 폭넓은 강의를 제공함

[그림 Ⅲ-6]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 세법교실' 동영상 교육 페이지



자료: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 세법교실 - 동영상 교육」, <https://taxstudy.nts.go.kr/frnt/H100024/taxEduc/renew/F/courDtaList.do>, 검색일자: 2023. 12. 28.

3) 국세청 SNS 채널

□ 국세청은 주요 정책 및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세정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

- 국세청이 활용하는 SNS 채널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트, 카카오토리, 유튜브, 카카오 콘텐츠뷰 등이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음
- 다만 [그림 III-7]의 국세청 유튜브 공식 채널 예시와 같이 국세청 전체 부서의 콘텐츠가 하나의 채널에 업로드 되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림 III-7] 국세청 Youtube 공식 채널



자료: 국세청 Youtube, <https://www.youtube.com/@ntskorea/featured>, 검색일자: 2023. 12. 28.

2. 기타 정부 부처 지원 제도

가. 마을 세무사 제도

- 행정안전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2016년부터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 왔음⁴⁶⁾
- 마을세무사는 2018년 기준 1,35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까지 99,433건의 마을세무사 상담이 이루어짐
- 마을세무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임기 및 이용 대상 등을 규정하며, 대체적으로 임기는 2년 및 연임 가능으로 유사하지만 마을세무사의 위촉 자격 요건 및 구체적인 역할은 지방자치별로 상이함⁴⁷⁾
- 서울특별시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에 대해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건으로 한정하지만, 경주시의 경우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 지원에 대해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함
 - 인천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에 같이 별도의 청구액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 또한 존재함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의 경우 마을세무사의 위촉 요건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규정하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무사

46)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78#none, 검색일자: 2023. 11. 23.

47)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7407호,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7145호,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5015호,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51호 등 참조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위촉 요건을 규정함

- 마을세무사의 이용 대상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국선대리인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자산, 소득 요건 등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함
-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해당 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 후 상담을 신청하여 이용함

나.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함
- 지원 분야는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노무, 회계(세무), 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 제도, 교육 등 기업의 모든 경영·기술 애로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함을 목표로 함
- 비즈니스지원단의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으로 구성됨

1)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의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이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로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전문상담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로 함⁴⁸⁾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피담자는 해당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담수당은 1일 8시간 22만원(시간당 27,500원) 이내로 하고 매월 정산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맞추어 실비 지급함

2) 현장클리닉

- 기업애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상담위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일정한 예비 창업자에 한해 현장클리닉을 추천할 수 있음
 - 현장클리닉 신청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란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중인 예비 창업자, 창업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유 중인 자 등임
 - 단, 소매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8)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제5조 1항, p. 2

〈표 III-12〉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제외 업종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 업종 ¹⁾
<p>- 예비 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²⁾에 입주 중인 예비 창업자 2. 창업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보유 중인 자 3.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³⁾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 5.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⁴⁾),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증개업(46102中), 귀금속 증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58219中) ·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잭블링 및 베타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주: 1)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 업종의 업종별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코드 기준임
 2)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팀스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 기타 창업지원공간 등
 3)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1인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업터 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4) 표준산업분류 코드 33402에 해당하는 세세분류인 영상게임기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의 경우를 의미함. 이하 동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별표 1】, 【별표 2】 저자 편집

- 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애로 해결을 위해 지원단이 지원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함
 -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기술 개발 분야에 한해 최대 7일까지 지원 가능하고,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함(심층 컨설팅 승인 시 최대 14일 지원)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현장지도결과서 60점 이상, 만족도 조사 70점 이상인 경우에 자문비용을 클리닉 위원에게 지급함
- 현장클리닉 자문비용은 1일 35만원으로 하며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지원기업이 2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기업부담금 면제지역⁴⁹⁾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지원기업은 부가가치세만 부담함

〈표 Ⅲ-13〉 현장클리닉 기업부담금 납부액

(단위: 원)

일반지역(면제지역 외)

수행 일수	계약금액 (A)	정부지원금 (B=80%*A)	기업부담금 (C=20%*A)	VAT (D=10%*A)	실 입금액 (E=C+D)
1일	350,000	280,000	70,000	35,000	105,000
2일	700,000	560,000	140,000	70,000	210,000
3일	1,050,000	840,000	210,000	105,000	315,000

면제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수행 일수	계약금액 (A)	정부지원금 (B=100%*A)	기업부담금 (C=0%*A)	VAT (D=10%*A)	실 입금액 (E=C+D)
1일	350,000	350,000	0	35,000	35,000
2일	700,000	700,000	0	70,000	70,000
3일	1,050,000	1,050,000	0	105,000	105,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별표 6】

49) 기업부담금 면제지역이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의미함(「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제23조 제4항)

[그림 III-8]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절차도

구 분	수 행 기 능
① 상담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상담(https://www.smes.go.kr/bizlink) ○ 전화 상담(☎1357,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방문 상담(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이동 상담(기업 현장방문)
②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분야의 지원단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지 작성 <전문상담 평가> * 추천 지원 일수 의무 기재
③ 현장클리닉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해결 상담의 경우 현장클리닉 추천 * 지원 제외 업종 및 제외 분야 확인(지원단)
④ 현장클리닉 적정성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은 현장클리닉의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승인(전화 또는 현장 방문) *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승인, 지원 일수 확정
⑤ 비즈니스지원단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은 클리닉위원 POOL 또는 관리기관이 추천하는 지원단 중에 현장클리닉 수행 위원을 선정 * 수행 위원과 수행일정 및 투입 일수 협의 * 클리닉위원 협약(온라인)
⑥ 수행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위원은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 * 선정 후 7일 이내 제출
⑦ 수행계획서 승인 및 기업부담금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단, 수행계획 변경은 기 등록 수행일 경과 전)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 기업부담금 입금 (수행계획서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 운영기관은 입금액 및 소기업 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
⑧ 현장클리닉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1일 5시간으로 하며, 1일 1개 지원기업에 대해서만 수행
⑨ 현장지도결과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은 현장클리닉 수행 완료 후 현장지도결과서 작성 * 최종 수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려 후 7일 이내 제출
⑩ 현장지도결과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결과서 평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클리닉위원에게 자문료 지급 * 클리닉위원은 지원기업에 세금계산서 발급
⑪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비즈니스지원단 총괄 평가 및 심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별표 5】

〈표 Ⅲ-14〉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세무지원 관련 우수 사례

■ 기업 애로사항

산업용 접착테이프 및 이형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수강케미칼은 기업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신청 및 신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홈택스를 이용해 증여 신고를 하지 못했고, 결산에 따른 기업 준비자료를 제공하여 세계 혜택 등을 파악할 줄도 몰랐다.

■ 현장클리닉 진행



담당 자문위원은 수강케미칼이 인터넷을 통해 회계 및 사무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이용해 법인결산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통관 업무 회계 처리를 위해 u-Trade-Hub를 이용한 영세율 처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홈택스, 한국경영원, 유니패스, 유트레이드허브 등을 활용한 세금 신고 및 수출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능력을 향상시켰다.

■ 현장클리닉 효과

법인세 신고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활용하자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처리 변경에 따른 효과로 1,500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 접대비 총 초과 금액을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공제 효과를 보았고 부도어음 금액 미수금 대손 처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법인세 신고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2020년 매출 8,676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출 증가에 따른 세액면세 처리를 받는 등 금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바로 알고 실제 금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업체 담당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자료: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022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우수사례집』, 2022, pp. 30~33

3. 소결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 지원은 주로 국세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컨설팅과 종합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각 제도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그 대상 범위가 모두 상이하여, 근거 법령과 반영하는 기준액의 종류 및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남(〈표 III-15〉 참조)
-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의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제도’와, 청구세액 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불복 청구 시 세무대리인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본 제도들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재능 기부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비변상적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 또한 두 제도는 담당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제도를 안내할 의무가 존재하며, 상속세와 재산세, 부동산세와 같은 재산제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운영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2020년 시작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을 대체하는 단계에 있는 제도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및 감면과 관련한 제출 자료 및 세액 계산에 대해 서면 질의 회신 서비스를 제공함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되어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가업승계 세제 혜택 관련 사전 및 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제도임
- 이밖에도 종합지원제도로 2018년 ‘혁신성장 세정지원’에 이어, 2023년 9월부터는 이를 확장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미래성장 세정지원’은 본청 및 지방청, 그리고 각 세무서에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택스 내 전용 상담 창구 외에도 대상 기업의 회계관

리 전반 및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납세 관련 각종 혜택을 제 공함

- 국세청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부의 비즈니스지원단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이나 ‘현장 클리닉’을 통해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행안부의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및 취약 계층 등에 제공되는 무료 세 무상담 서비스로, 지원범위와 마을세무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지자체별로 상이하 나, 주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다룸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은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 클리닉’을 통 해 기업의 모든 경영·기술 애로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며, 이 중 회계(세무) 분 야가 포함됨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전화, 방문, 인 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함
 - ‘현장클리닉’은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으로 애로 해소가 어려운 경우 일부 적격 한 기업에 제공되며, 지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함

〈표 III-15〉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비교

담당 부처 및 구분	제도명	지원 대상	지원 사항	비고	지원단계
국 세 청 개 별 권 설 팀 제 도	영세납세자 지원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및 장애인,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 이때 영세 중소기업은 수입 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의 비상장 영리 내국 법인 - 재산세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의 일대일 맞춤형 창업 및 폐업 자문 서비스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과세 자료, 법령 자문,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방문 서비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보호담당관 총괄로 업무담당 직원 및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 포함 4~10인 으로 구성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안내 의무 및 직권 지정 권한 - 나눔 세무대리인의 임기는 연인 가능한 2년이며, 협의의 추천을 받아 재능기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여비 실비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운영 (신고 준비, 불복청구 준비), 폐업
	국산대리인 지원제도 (201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법인 제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재산세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상으로 지원 - 국산대리인은 불복청구 범형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고, 증거서류 보완을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대리인은 지식 기부의 형태로 해당직에 3년 이상 재직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중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 요건자가 불복 청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대상 제도 안내 의무 -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임기 후 국제심사 위원회와 같은 위원 위촉 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불복청구)

〈표 III-15〉의 계속

담당 부처 및 구분	제도명	지원 대상	지원 사항	비고	지원단계
중소기업 한정	범인세 공제감면 권설팀 ¹⁾ (2022. 8.)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관련 제출 자료나 감면 여부 및 세액의 계산을 서면으로 질의 회신(신청일 익일 말일 까지 회신) (부가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 납세서비스 일원화 -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 면제 - 성실신고 간편 검증(4~5일) 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일부 법인 선정 후 협약 기간 내에 정기 및 수시 권설팀을 진행하던 기존 제도(중소기업 세무권설팀)와 달리 자격 기준에 해당 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상 시로 권설팀 신청 가능	운영 (신고 준비, 신고 후 관리)
	가업승계 세무권설팀 (2022. 9.)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상증세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상 업종 범위, 조특법상 제121조 독립성 기준 충족 - 대표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기업 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	- 대상 기업 선정일로부터 1년간 1회 이상의 정기 권설팀 및 기업 요청에 따른 수시권설팀 진행 - 가업승계 세제 혜택 관련 사전·사후요건 진단 및 보완사항 안내 - 세법 해석 제공 및 해석 변경의 여지 존재 시 이를 안건으로 상정 (부가 혜택) - 가업승계 관련 서면질의 제출 시 최우선 처리	- 1년에 1회 국세청 공지 기간 내 신청 후 서면 심사로 선정	운영 (신고 준비, 신고 후 관리)

〈표 III-15〉의 계속

담당 부처 및 구분	제도명	지원 대상	지원 사항	비고	지원단계
중소기업 종합지원제도	혁신성장 세정지원 (201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혁신성 평가 통과 중소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설립 후 5년 미만의 중소기업 - 이외 수입금액 1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4차 산업 관련 기업, 청년 친화 강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기 세무조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한 연장(9개월 범위), 납세담보 면제(1억원 한도), 경정청구 우선처리,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서 내 혁신성장기업 전담 창구 마련, 거점세무서에서 특성화된 컨설팅 제공 - 맞춤형 세법교실 출장 강좌 - 홈택스 상담 시 우선 검토 회신 	-	운영 (신고 준비, 신고 후 관리)
	미래성장 세정지원 (202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수출중소기업, 신사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신기술녹색 중소기업까지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세정지원」 지원 사항 중 납부기한 연장(9개월 범위), 납세담보 면제(1억원 한도), 경정청구 우선처리,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내용 유지 - 압류 및 매각 유예(최대 1년)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비용 확인 제외 - 구조조정 중소기업 대상 세무 상담 지원 - 미래성장 지원센터 분청 및 지방청, 각 세무서에 운영 - 홈택스 내 전용상담 시스템 	-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대체하는 제도	운영 (신고 준비, 신고 후 관리)

〈표 III-15〉의 계속

담당 부처 및 구분	제도명	지원 대상	지원 사항	비고	지원단계
기타	Smart A	- 모든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 홈택스 자료실 무료 게시 범위 확대 - 세무 관련 현장 교육 및 온라인 강의 제공	-	운영 (신고)
	납세자 세별교실	- 전체 납세자	- 주요 세제 관련 정책 및 세무 정보 콘텐츠 제공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트, 카카오톡, 유튜브, 카카오톡 콘텐츠부 활용	-	운영 (신고 준비)
	SNS 채널	- 전체 납세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마을세무사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역할은 지자체별로 상이 - 주로 국제 및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 상담	- 마을세무사는 재능 기부를 통해 제도에 참여함	창업, 운영 (신고 준비, 불복청구 준비), 폐업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 및 소득 요건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대상 - 서울시는 건별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경주시는 3백만원 미만, 인천 및 대전광역시에는 청구금액 요건 부재	- 기업의 모든 경영 및 기술에 대해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며, 이 중 회계(세무) 분야 포함 - (기업 애로 전문가 상담) 분야별 전문가가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종합상담 지원	- 관리기관은 기업으로 전문가 상담위원에게 1일 8시간 최대 22만원의 상담 수당과 실비 예비 지급 가능 - 현장클리닉의 경우 1일 35만원의 지원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정부가 일부 혹은 전부 지원	운영 (신고 준비, 불복청구 준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중소기업 애로 상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 (현장 클리닉)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특정 예비창업자	-	-	운영 (신고 준비)

주: 1)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무 컨설팅 지원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통합표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의 내용만 정리함
자료: 본문 내용 저자 정리

IV.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국외 사례

1. 미국

가.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센터 웹페이지

- IRS는 웹사이트에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센터(Small Business and Self - Employed Tax Center)’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들을 매뉴얼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⁵⁰⁾
- 최상위 메뉴는 ① 일반 정보, ② 세금 신고 준비, ③ 세금 신고/납부, ④ 사업체 소유 단계, ⑤ 주제 일반, ⑥ 인터넷 강의의 6개로 구성되며, 첫 페이지에서 한 눈에 하위 메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함
- 6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메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하위 메뉴 내에 세부 설명과 관련 링크 및 양식 등이 다단계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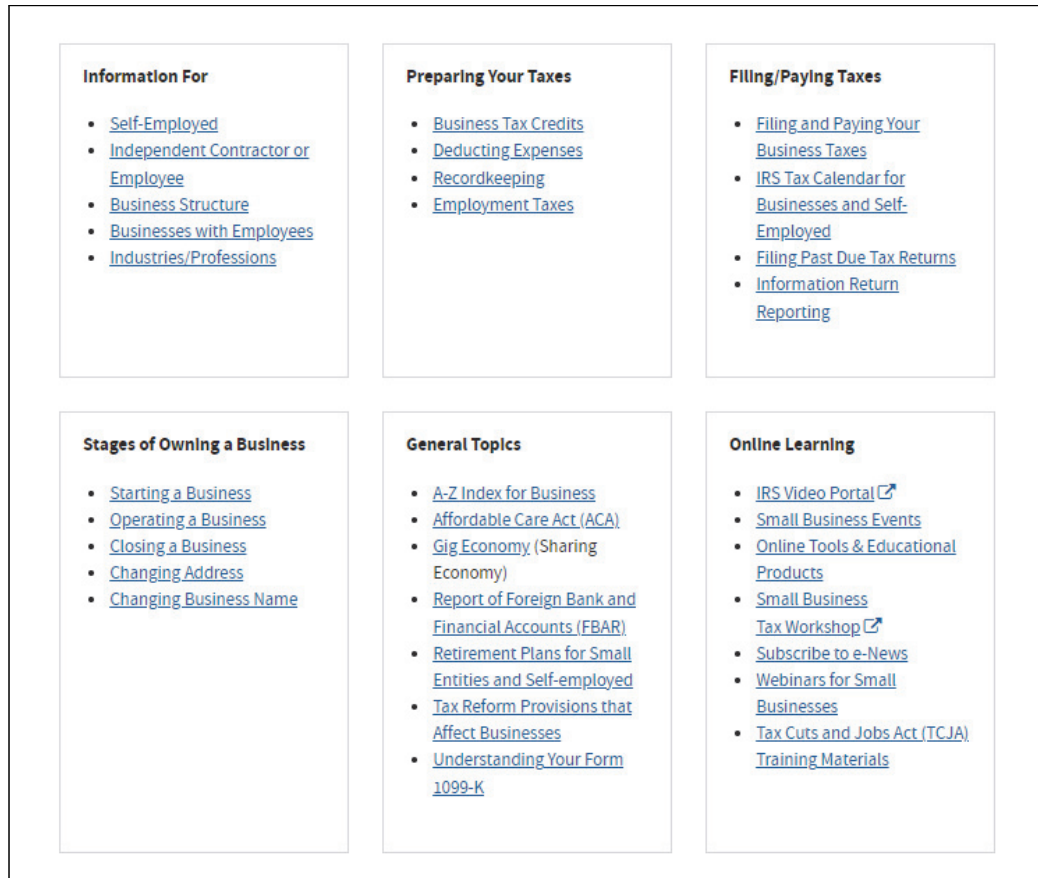
50) IRS,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검색일자: 2023. 11. 30.

〈표 IV-1〉 IRS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첫 페이지 구성 정리

상위 메뉴	하위 메뉴	
정보 (Information For)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또는 직원 -사업구조	-직원이 있는 사업체 -업종/직종
세금 신고 준비 (Preparing Your Taxes)	-사업 세액 공제 -비용 공제하기	-기록관리 -고용세
세금 신고/납부 (Filing/Paying Taxes)	-사업체 세금 신고 및 납부 -IRS 세무달력	-기한 경과 후 신고서 제출 -정보 신고서 제출
사업체 소유 단계 (Stages of Owning a Business)	-사업 시작하기 -사업 운영하기 -사업 종료하기	-주소 변경하기 -사업체명 변경하기
일반 사안 (General Topics)	-사업체를 위한 A-Z 정보색인 -의료보험개혁법 -공유경제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	-영세기업 은퇴계획 자료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개혁법 조항 -양식 1099-K 이해하기
온라인 교육 (Online Learning)	-IRS Video Portal -영세기업 관련 행사 -인터넷 도구 및 교육 상품 -영세기업 세금 워크숍	-인터넷 뉴스 구독 -영세기업 대상 웹 세미나 -‘세금 감면 일자리에 관한 법률’ 교육 자료

자료: IRS,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검색일자: 2023. 11. 30. 메뉴 내용 저자 정리

[그림 IV-1] IRS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실제 첫 페이지



자료: IRS,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검색일자: 2023. 11. 30.

나.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프로그램 서비스

□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IRS Free File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납세자들이 민간 온라인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함⁵¹⁾

51) IRS, "IRS Free File: Do your Taxes for Free,"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검색일자: 2023, 11, 30.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세금 신고와 관련한, 개인을 포함한 영세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고 관련 지원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이때 소프트웨어 접속은 각 업체가 아닌 IRS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총 조정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수준이 7만 3천달러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차별화 됨

〈표 IV-2〉 미국의 IRS Free File의 소득별 제공 서비스

AGI USD 73,000 이하 납세자	AGI USD 73,000 초과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신고 가이드 제공 - Q&A 반응형 세금 신고서 제공 - 모든 계산을 무료로 수행 - IRS 파트너 사이트에서 세금 신고 수행 - 일부 주정부의 세금 신고까지 무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신고 가이드 미제공 - 제한된 계산 수행 - Form1040*과 동일한 전자세금신고서 제공 - 주정부 세금 무료 신고 미제공

주: Form 1040은 미국의 연간 소득세 신고 양식임
 자료: IRS, "IRS Free File: Do your Taxes for Free,"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검색일자: 2023. 11. 30.

- 본 제도는 IRS와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영리 연합인 Free File Alliance 사이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됨
 - 협력사들은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단독 협력사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전년도에 무료 신고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서비스를 이용한 협력사에서 다음해에 무료 신고 서비스의 재사용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함

다.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

- 저소득 및 취약 계층에는 소득세 신고지원 자원봉사(Volunteer Income Tax Assistant, 이하 VITA) 및 노령층 세무 자문(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이하 TCE)과 같은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함⁵²⁾

- VITA는 ① 연소득 6만달러 이하이거나, ② 장애인, ③ 영어 구사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TCE는 60세 이상의 납세자의 연금 및 은퇴 관련 세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 자원봉사자들은 셀프 신고를 하는 저소득 및 취약층 납세자를 지원하며, VITA/TCE를 통해 작성된 모든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이밖에도 '자가 작성(Self-Prep)'이 기재된 일부 웹 기반 무료 세금 신고 사이트에서도 신고 과정에서 IRS 공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VITA와 TCE의 프로그램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IRS가 관리를 담당함
 - 상담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은 IRS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던 비영리단체에서 은퇴한 개인인 경우가 많으며, IRS 기준을 충족시키는 세법 교육 이수 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VITA/TCE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전국의 주민 및 지역 센터, 도서관, 학교, 쇼핑몰 등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함

라. 현장 및 온라인 교육

- IRS는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연방세 납세의무의 이해와 준수를 돕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및 회의와 같은 교육 훈련 행사들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함⁵²⁾
 - 행사 주제는 세금 일반 사항부터 기록 보관 및 은퇴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됨
 - 일반적으로는 연방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각 주 IRS의 협력 기관이 후원하고 주최하는데, 대부분은 무료로 진행되나 일부 행사의 경우 협력 기관에 수수료를

52) IRS, "Free Tax Return Preparation for Qualifying Taxpayers," <https://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qualifying-taxpayers>, 검색일자: 2023. 11. 30.

53) IRS, "Small business tax workshops, meetings and semina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california-tax-workshops-meetings-and-seminars>, 검색일자: 2023. 10. 24.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일례로 조지아주의 경우 IRS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등과 협력하여 조지아 대학교가 주(州) 내 18개 지역에서 영세기업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⁵⁴⁾⁵⁵⁾⁵⁶⁾

- 자금 조달 및 사업계획 작성, 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을 비롯한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집체 교육 및 웹 세미나 등을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함

- 행사의 정보는 IRS 웹사이트 내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카테고리 내 ‘Online Learning’ 메뉴의 ‘Small Business Event’ 항목에서 각 주별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워크숍이나 세미나와 같은 단체 교육 외에도 IRS Video Portal의 Business 카테고리에서 언제든지 주제별 무료 동영상 교육 자료를 시청할 수 있음⁵⁷⁾

- 교육의 주제는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 납세자우선법(Taxpayer First Act), 사업비용 및 사업소득, 사업전환, 세금 신고 및 납부, IRS의 세무조사와 담보권, 재난, 고용주, 세금 신고 후의 문제, 은퇴 계획, 조세 포탈, 창업 등으로 매우 다양함

- 각 주제별로 1~30여 개의 세부 교육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동영상 하단에는 스크립트가 함께 제공됨

54) IRS, “Georgia Tax Workshops, Meetings and Semina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georgia-tax-workshops-meetings-and-seminars>, 검색일자: 2023. 10. 24.

55)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About us,” <https://georgiasbdc.org/about-us>, 검색일자: 2023. 10. 24.

56)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Training,” <https://georgiasbdc.org/training>, 검색일자: 2023. 10. 24.

57) IRS Video Portal, “Tax Professionals,” <https://www.irsvideos.gov/Professional>, 검색일자: 2023. 11. 30.

[그림 IV-2] IRS Video Portal의 동영상 교육 자료 예시

The screenshot shows the IRS Video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Individuals', 'Businesses', 'Tax Professionals', 'Governments', 'Charities & Non-Profits', and 'Multilingual'. The 'Businesses' tab is selected, and the page title is 'How to complete Form 8300 - Part II'.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arious topics like 'Small Business Tax Workshop', 'Taller de impuestos para pequeños negocios', 'Affordable Care Act', 'Bank Secrecy Act', 'Business Expenses', 'Business Income', 'Changing Your Business', 'Disaster Information', 'Employers', 'Filing and Paying Taxes', 'IRS Audits', 'IRS Liens', 'Post-Filing Issues', 'Resources', 'Retirement Plans', 'Scams and Fraud', 'Starting a Business', and 'Taxpayer First Act'. The 'Transcript' option is checked and highlighted in blue. The video player shows a laptop displaying the IRS Form 8300. The video player controls at the bottom include a play button, volume icon, a progress bar at 03 / 9:04, a CC icon, and a share icon.

IRS Video Portal

Individuals Businesses Tax Professionals Governments Charities & Non-Profits Multilingual

Small Business Tax Workshop

Taller de impuestos para pequeños negocios

Affordable Care Act

Bank Secrecy Act

Business Expenses

Business Income

Changing Your Business

Disaster Information

Employers

Filing and Paying Taxes

IRS Audits

IRS Liens

Post-Filing Issues

Resources

Retirement Plans

Scams and Fraud

Starting a Business

Taxpayer First Act

Transcript

Music plays as the presentation begins.

Now let's move on to Part 2 of the form.

In situations where a transaction is being conducted on behalf of more than one person - including a married couple or a parent and child - complete Part 2 for any one of the persons.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for the other persons by completing Part 2 on Page 2.

If more than three persons are involved,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in the comments section on Page 2 of the form.

Notice that like Item 13 in Part 1, Item 22 of this section asks for occupation, profession, or business.

And like Item 13, detail matters here.

자료: IRS Video Portal, “Bank Secrecy Act - How to complete Form 8300 - Part II,” <https://www.irsvideos.gov/Business/BankSecrecyAct/HowToCompleteForm8300-PartII>, 검색일자: 2023. 11. 30.

2. 캐나다

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 캐나다 정부 통합 사이트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 자원(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납세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⁵⁸⁾
- ① 사업자번호 등록, ② 소득세, ③ 급여, ④ GST/HST, ⑤ 소비세, 관세 및 부과금의 5개 최상위 메뉴의 하위 주제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음
- 5개 최상위 메뉴를 구성하는 하위 주제들은 다음 <표 IV-3>과 같으며, 하위 서비스 페이지는 또 별도의 메뉴 및 링크, 양식 등이 다단계로 구성됨
 - 또한 하위 주제 내에서도 가장 자주 이용되는 세부 서비스의 경우 최상위 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함

<표 IV-3> 중소기업을 위한 캐나다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첫 페이지 구성

최상위 메뉴	내 용	
사업자번호 등록	하위 주제	-사업자번호 또는 캐나다 국세청 프로그램 계정 필요 상황 -사업자번호 등록방법 -사업 및 세금 계정 변경 -대리인 권한 부여 및 승인 취소 -캐나다 국세청 등록 및 주정부 및 기타 연방 프로그램 -코로나19 및 고용주를 위한 정보
	최다 이용 서비스	-캐나다 국세청 전자서비스 등록

58) Government of Canada, “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resources-for-small-and-medium-businesses.html>, 검색일자: 2023. 11. 30.

〈표 IV-3〉의 계속

최상위 메뉴	내 용		
소득세	하위 주제	-사업 또는 직업 소득 -파트너십 소득	-법인소득세 -비거주법에 대한 세금정보
	최다 이용 서비스	-내 비즈니스 계정 -연락 담당관 서비스	-대리인을 위한 내 신탁 계좌 -납부
급여	하위 주제	[급여단계] 1. 급여 공제 가능 여부 확인 2. 새 직원 설정 3. 급여 프로그램 계정 개설 [기타 주제 및 정보] -과세 혜택 및 수당 찾기 -급여 계정 세부정보 수정	4. 공제 및 기여금 계산 5. 지급(송금) 출처 공제 6. 급여정보 보고서 제출 -사업세 계정 폐쇄 -과태료, 이자 및 기타 결과
	최다 이용 서비스	-급여공제 온라인 계산기 -EI 보험료 계산 -CPP 기여도 계산	-급여 조사 시뮬레이션 -급여 관련 중요 일자 -2020년 변경 사항
GST/HST	하위 주제	GST/HST 신고, 징수 및 납부 단계 1. 등록 및 납부 시작 시기 2. 계좌 개설 또는 관리 3. 부과 및 징수(소비 단계) [기타 주제 및 정보] -환급 신청 -세액 공제 신청	4. 세금신고서 제출 5. 납부 -GST/HST 계정번호 확인 -디지털 경제기업 관련 사항
	최다 이용 서비스	-GST/HST 전자신고 서비스 -GST/HST 액세스 코드	-GST/HST 계산기 -특정 상황에서의 GST/HST
소비세, 관세 및 부과금	하위 주제	-소비세(excise duties) -기타 부과금(excise taxes) -유류부과금	-항공 보안 부과금 -관세
	최다 이용 서비스	-유류부과금 등록	-유류부과금 감면 -연락처 정보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resources-for-small-and-medium-businesses.html>,
검색일자: 2023. 11. 30. 내용 저자 정리

[그림 IV-3] 중소기업을 위한 캐나다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실제 첫 페이지

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Direct access to tax-related services and information for businesses.

On this page:

- [Business number registration](#)
- [Income tax](#)
- [Payroll](#)
- [GST/HST](#)
- [Excise taxes, duties and levies](#)

Business number registration

Services and information:

- [When you need a business number or Canada Revenue Agency program accounts](#)
- [How to register for a business number](#)
- [Changes to your business and tax accounts](#)
- [Authorize a representative or cancel their authorization](#)
- [CRA registration and provincial or other federal programs](#)
- [COVID-19 and information for employers](#)

Most requested services for business number registration

- [Register with the CRA's electronic services](#)

Income tax

Services and information:

- [Business or professional income](#)
- [Partnership income](#)
- [Corporation income tax](#)
- [Tax information for non-resident corporations](#)

Most requested services for income tax:

- [My Business Account](#)
- [Represent a Client](#)
- [Liaison officer](#)
- [Payments](#)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resources-for-small-and-medium-businesses.html>, 검색일자: 2023. 11. 30.

나. 연락 담당관 서비스

-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납세 의무와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전화 및 온라인을 이용한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인 ‘연락 담당관(Liaison Offic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⁵⁹⁾
- 캐나다 전역에서 ① 전화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나, ② 협회 또는 그룹을 위한 웨비나(webinar)의 형태로 연락 담당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연락 담당관과 예약은 전화 및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짐

〈캐나다 연락 담당관(Liaison Officer) 서비스 상담 내용〉

- 납세 의무 및 적정 비용 공제 안내
- 일반부기 개념 및 모범 사례 설명
- (개인 상담 시) 부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및 장부 및 기록과 관련된 제안 수행
- 세무 관련 오류 방지 방법 설명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 및 전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
- 납세 관련 문의사항 응답 및 애로사항 해소
- 중소기업 재무 기준 관련 논의
- 코로나19 관련 조치 논의

자료: Government of Canada, “Liaison Officer service - free tax help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compliance/liaison-officer-initiative-loi.html>, 검색일자: 2023. 11. 30.

- 연락 담당관 서비스는 적격 납세자에게 예약을 권유하는 서신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며, 후속 조치 및 참여를 제안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기

59) Government of Canada, “Liaison Officer service - free tax help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compliance/liaison-officer-initiative-loi.html>, 검색일자: 2023. 11. 30.

도 함

- 이때 연락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 발신자의 이름, 근무처, 사무실 위치 등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재 캐나다 전역에 약 130명의 연락 담당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락 담당관 서비스를 이용함
 - 서비스 이용 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납세자의 98%가 납세 의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연락 담당관과 논의한 정보는 기밀이 보장되며, 캐나다 국세청 내 혹은 그 외 타인과 공유되지 않음

다. 지역사회 소득세 신고 봉사 프로그램

- 지역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소득세 신고 봉사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이하 CVITP)’이 운영되고 있음⁶⁰⁾
- 캐나다 역시 중소기업에 특화된 세정 신고 지원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CVITP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CVITP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노인, 주거 불안정자, 원주민, 이주민, 장애인, 학생 및 청소년 등임
 - CVITP의 저소득 기준은 1인 가족 기준 CAD 35,000, 5인 이상 가족 기준 CAD 52,500임
- 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대상 납세자가 세제 관련 혜택이나 공제를 적합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돕는 세무 클리닉을 준비하여 진행함

60) Government of Canada, “About free tax clinic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community-volunteer-income-tax-program/lend-a-hand-individuals/about.html>, 검색일자: 2023. 11. 30.

- 이때 캐나다 국세청은 CVITP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훈련, 최적화된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UFile CVITP software), 제한된 수량의 노트북,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고, 세무 클리닉 정보를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내에 게시함
- 세무 클리닉은 대면 혹은 화상,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음

〈표 IV-4〉 세무 클리닉 이용 방식 유형

유형		이용 방식
워크인 (walk-in)		예약 없이 공고된 기간 동안 방문하여 선착순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서를 작성
서면 제출 (drop-off)		공고된 기간 동안 소득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원봉사자에 의해 작성된 세금 신고서를 추후 수령(서류 제출 및 세금 신고서 수령 시 신분 확인 요구)
예약제	직접 방문	예약한 시간에 자원봉사자와 대면하여 세금 신고서 작성
	전화 및 화상회의	납세자가 위치한 지역 내 자원봉사자가 예약된 시간에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북부지역의 경우 납세자가 위치한 지역 외 자원봉사자가 작성을 도와줄 수도 있음)

자료: Government of Canada, "Get your taxes done at a free tax clinic,"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community-volunteer-income-tax-program/need-a-hand-complete-your-tax-return.html>, 검색일자: 2023. 11. 30. 내용 저자 정리

- 퀘벡 지역에서는 '소득세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ITAVP)'이라는 명칭으로 1988년부터 CVITP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3. 호주

가. 국세 클리닉 프로그램(National Tax Clinic program)⁶¹⁾

- 호주 국세청은 세금 관련 전문적인 조언과 대리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부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여 국세 클리닉을 운영함
- 해당 클리닉은 자격을 갖춘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가 이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이용 요건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세금 클리닉의 1) ATO로부터 연체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불 요구나 알림을 받았거나 사업 활동 명세서가 수년(2년 이상) 지연된 경우, 2) 지난 12개월 동안 40,000호주달러 미만의 수입을 기록, 3) 세무사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이나,⁶²⁾ 대다수의 클리닉에서는 1차 상담 후 지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클리닉은 전화나 웹 회의를 통해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면 회의를 통해 제공되고, 세금 관련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격을 갖춘 클리닉 관리자의 감독 하에 무료 세금 조언과 지원을 제공함

61) ATO, "National Tax Clinic program,"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financial-difficulties-and-disasters/support-to-lodge-and-pay/national-tax-clinic-program>, 검색일자: 2023. 11. 27.

62) UNSW, "Get free tax advice and business coaching," <https://www.unsw.edu.au/business/our-schools/accounting-auditing-taxation/about-us/unsw-clinic/free-tax-advice-business-coaching>, 검색일자: 2023. 11. 27.

나. 가산세 사면 프로그램(Lodgment penalty amnesty program)⁶³⁾

- 호주 국세청은 2023~24년 예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무신고 가산세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면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기한이 지난 소득세 신고서, 사업 활동 명세서, 부가 혜택 세금 신고서에 적용되고, 적격 연체 양식이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출된 경우, 지연 제출에 적용되는 미제출 가산세(failure to lodge(FTL) penalties)가 면제됨
-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 제출 후 별도의 사면 신청은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당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됨
- 사면 대상은 기존 신고 만기일에 연간 매출액이 1,000만호주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간 기한이 지난 소득세 신고서, 사업 활동 명세서 또는 부가 혜택 세금 신고서가 연체된 경우이며, 순자산이 500만호주달러 이상인 개인 소유 단체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4. 핀란드

- 핀란드 국세청은 2015년 신규 기업들이 초기부터 납세 의무를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운영 모델인 ‘신규 기업 지침 모델(Guidance Model for Newly Started Businesses)’ 프로젝트를 시작함
 - 대상 기업은 자원의 한계에 따라 창업 단계에서 국세청 등록부(부가가치세 등록부, 고용주 등록부)에 등록한 신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63) ATO, “Lodgment penalty amnesty program,”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starting-registering-or-closing-a-business/starting-your-own-business/supporting-your-small-business>, 검색일자: 2023.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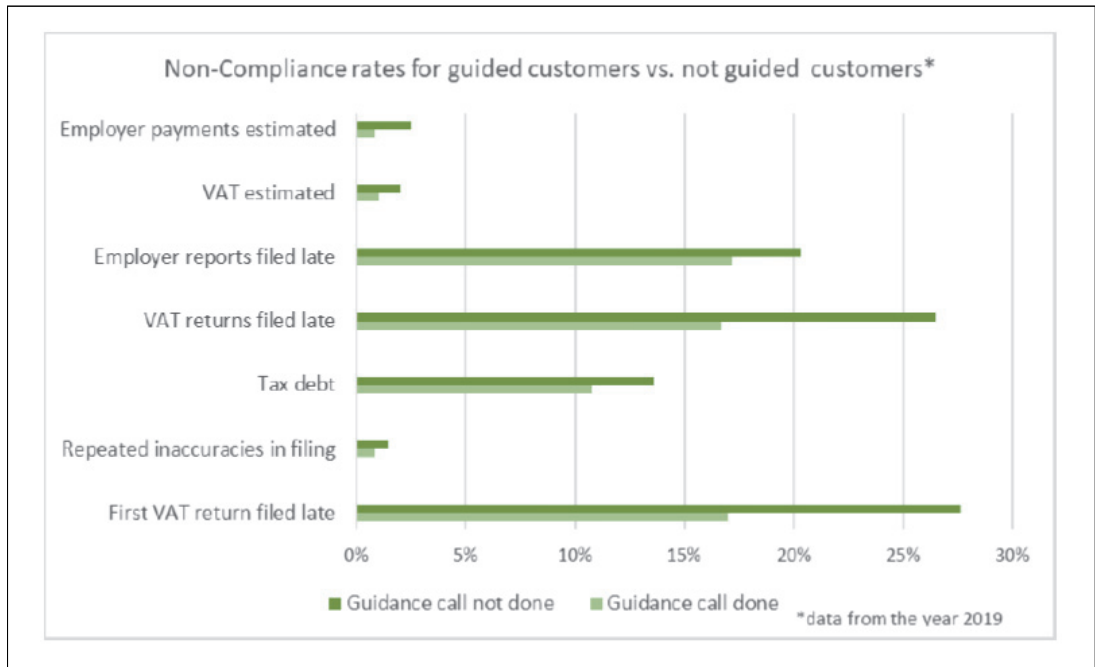
제한됨

- 외국 기업이나 국세청의 고액 납세자 부서 대상 기업, 차명 기업이나 페이퍼 컴퍼니 등은 제외되며, 대상 기업의 수는 2018년 2,506개, 2019년 3,896개로 확인됨

- 전화 및 동영상 제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예방적 안내를 통해, 신규 기업이 납세 의무를 인지하고 모든 세무 문제를 적시에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델의 지침 계획은 매년 업데이트 되며, 활동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특정 연도에 개최되는 웹 세미나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본 프로젝트의 대상 기업은 등록 단계에서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며, 첫 회계연도의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 지침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세무 관련 안내를 제공받음
- 창업 단계에서는 등록 시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인식 여부와 필요한 경우 기업이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전화와 함께, ‘웰컴 뉴스레터 패키지’를 발송함
 - 전화를 통해 납세자와 초기 관계를 형성하고 납세자가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 창업 이후 운영이 시작되면 ‘신규 사업 뉴스레터 패키지’를 발송하고 첫 부가가치세 과세 전까지 관련 웹 세미나 등을 제공하며, 과세 기간에 맞춰 안내 및 리마인드콜을 발신하기도 함
 - 고용주 연간 신고 및 법인세 신고 전에는 안내 전화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혹은 법인세 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리마인드콜이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3기에 걸쳐 연속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전화(control call)를 받을 수 있음

- 핀란드 국세청이 2019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본 프로젝트의 안내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그렇지 못한 납세자들에 비해 납세 준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IV-4) 참조)
- 고용주 예상 임금 및 부가가치세 예상액 신고 지연 사례의 경우 안내 제공 집단이 두 배 혹은 그 이상 낮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사례 역시 안내 제공 집단이 약 10%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 Guidance Model for Newly Started Businesses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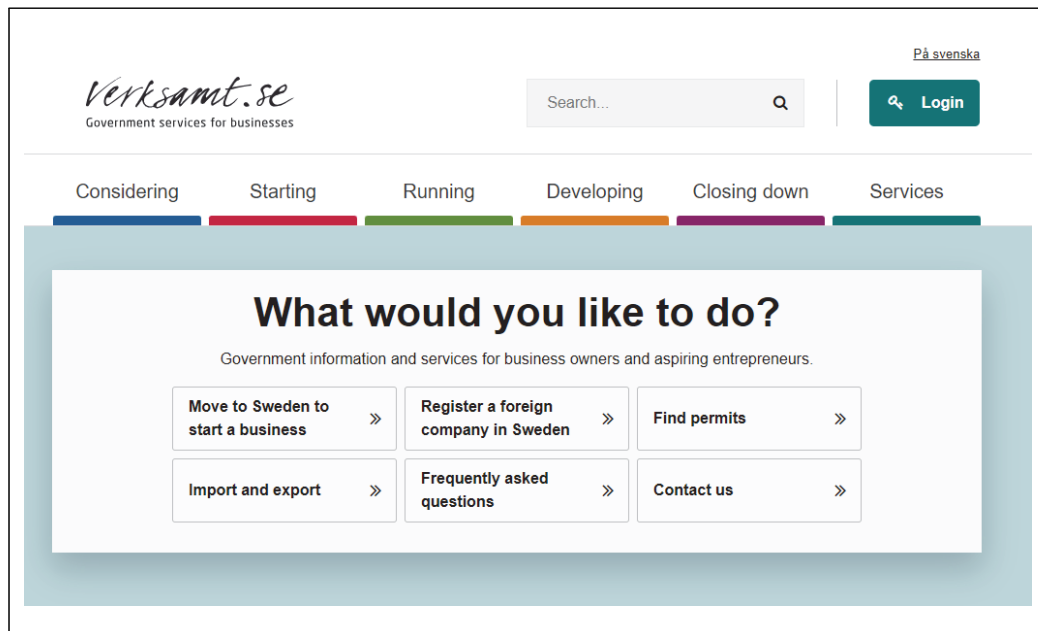


자료: OECD,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SMEs*, 2023, p. 64

5. 스웨덴

- 스웨덴은 2005년부터 범정부적인 ‘기업을 위한 정부 서비스 협력(Myndighetssamarbetetet startaoch driva företag)’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한 웹사이트(verksamt.se)를 통해 세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업 및 운영, 폐업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사이트는 스웨덴어와 영어로 지원되며, 창업 고려부터 창업, 운영, 개발, 폐업의 최상위 메뉴를 두고 있음

[그림 IV-5] Verksamt.se 영문 사이트 첫 페이지



자료: Verksamt.se, <https://www.verksamt.se/web/international>, 검색일자: 2023. 12. 27.

- 각 최상위 메뉴하에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하위 메뉴를 배치하여, 하위 메뉴하에 상세 설명과 관련 부처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연결함

- 창업 및 기업 운영과 폐업 시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들의 안내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세무행정과 관련된 사항들 역시 여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IV-6]을 보면 Running 메뉴의 하위 항목이 좌측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 세금 및 부담금(Tax and contributions), 부가가치세(VAT) 등 세금 관련 항목이 존재함
- 또한 해당 그림에서 오른쪽 본문 내용에는 하위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 내용 중 가운데에는 '세금 등록(Tax Registration)'과 같은 링크도 확인됨

[그림 IV-6] Verksamst.se 영문 사이트 하위 메뉴 중 세금 관련 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Running' section of the Verksamst.se websit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Considering', 'Starting', 'Running' (highlighted), 'Developing', 'Closing down', and 'Services'. The breadcrumb trail is 'Home > Running > Taxes and contributions'. The left sidebar lists various topics under 'Running', with 'Taxes and contributions'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Taxes and contributions' and includes the following text:

The page was last modified: 2023-04-26

If you run a business you can register for an approval for Swedish company tax, called F-tax, by applying to the Swedish Tax Agency. An F-tax certificate signifies that you are an entrepreneur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your own taxes and contributions.

The Swedish Tax Agency (Skatteverket) i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taxes in Sweden. When you start your own business, you apply to the Swedish Tax Agency for an approval for F-tax. The F-tax represents proof to your clients that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deducting tax or paying employer contributions.

[Businesses and employers at the Swedish Tax Agency](#)

[Tax registration \(Swedish Tax Agency\)](#)

Tax account
All physical and legal persons paying taxes and contributions have their own tax account at the Swedish Tax Agency. All your payments to the Swedish Tax Agency are recorded in your tax account.

VAT, employer contributions and tax deductions are also recorded in the tax return. F-tax and special A-tax are not recorded in the tax return, but are paid together with other taxes and contributions each month.

Sole traders
If you operate as a sole trader, preliminary estimated income tax and personal contributions are included in the F-tax you pay to your tax account each month. If you are

자료: Verksamst.se, “Running - Taxes and contributions,” <https://www.verksamst.se/web/international/running/taxes-and-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3. 12. 27.

- 이밖에도 스웨덴 국세청은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최신 정보가 담긴 온라인 뉴스레터 ‘TaxInfo’를 전국 4천명 이상의 세무 대리인에게 1년에 8회 발송함
 -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게 본 뉴스레터를 통해 양식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정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함
 - 또한 중소기업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과 시기별 뉴스, 기타 알림 사항들을 강조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함
 - 본 뉴스레터는 전반적인 정부 행정 업무에 대한 접근을 도울 수 있게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작성함
 - 창업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위주로 담고 있는 팟캐스트 자료가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2023년 현재 청취 수는 20만건 이상에 달함
 - 팟캐스트는 제작이 용이하고 이용자 또한 다른 작업과 동시에 청취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인 것으로 파악됨
 - 제작 시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어느 시점에 이용해도 무방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

6. 싱가포르

가. 신규 기업 자가진단 키트(New Company Start-Up Kit)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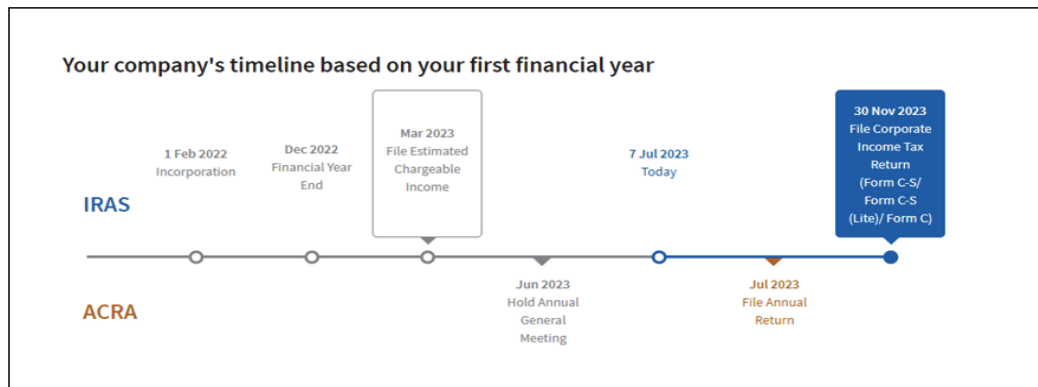
- 싱가포르 국세청은 신규 법인 사업자를 위한 New Company Start-Up Kit 서비

64) IRAS, “5 ways tax filing is made easier for new companies with the New Company Start-Up Kit,” <https://www.iras.gov.sg/who-we-are/what-we-do/annual-reports-and-publications/taxbytes@iras/companies-self-employed-partnerships/5-ways-tax-filing-is-made-easier-for-new-companies-with-the-new-company-start-up-kit>, 검색일자: 2023. 11. 28.

스를 지원함

- 2023년까지 16,500개 이상의 신규 법인 회사가 New Company Start-Up Kit를 이용함
- 해당 서비스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 및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대해 연차 보고서(Annual Return) 및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제출 기한을 안내함
 - New Company Start-Up Kit 접속 후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싱가포르 국세청 및 싱가포르 기업청에 대한 중요한 제출 기한(예상 청구 가능 소득 신고기한(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소득세 신고기한, 연례 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서 제출 기한 등) 등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함

[그림 IV-7] New Company Start-Up Kit



자료: IRAS, "5 ways tax filing is made easier for new companies with the New Company Start-Up Kit," <https://www.iras.gov.sg/who-we-are/what-we-do/annual-reports-and-publications/taxbytes@iras/companies-self-employed-partnerships/5-ways-tax-filing-is-made-easier-for-new-companies-with-the-new-company-start-up-kit>, 검색일자: 2023. 11. 28.

- New Company Start-Up Kit는 회사의 첫 번째 예상 청구 가능 소득(ECI)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보고서 제출 마감일 한 달 전에 이메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함
 - 키트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회사가 예상 청구 가능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기업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

- New Company Start-Up Kit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고유 법인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가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싱가포르 국세청 또는 싱가포르 기업청에 업데이트되지 않음⁶⁵⁾

나. ACRA-IRAS 세금신고 솔루션(ACRA 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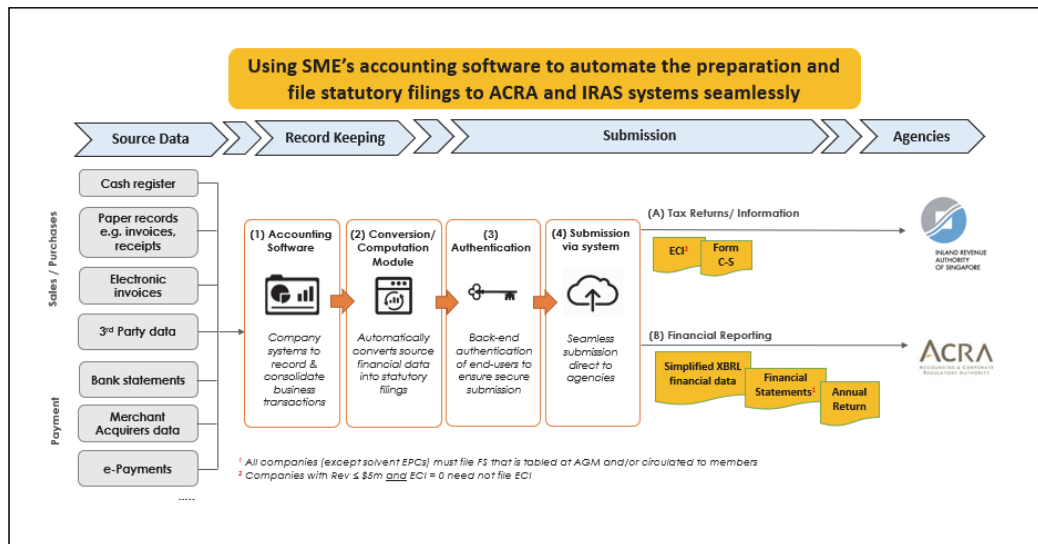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기업청과 싱가포르 국세청은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법정 서류 준비 및 제출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원활한 서류 제출 솔루션(seamless filing)은 세금 및 연간 신고서 제출 요구 사항을 회계 소프트웨어에 통합하여 회사가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운영 거래를 기록하고 필요한 법정 서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소프트웨어는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청 및 싱가포르 국세청에 연결되므로 기업은 각 기관의 포털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싱가포르 기업청은 연차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를 수동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최대 약 9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원활한 서류 제출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XBRL 형식 재무제표가 포함된 연차 보고서와 법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CS)를 한 번에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봄

65) IRAS, "New Company Start-Up Kit,"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new-company-start-up-kit>, 검색일자: 2023. 11. 28.

66) ACRA, "ACRA 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 <https://www.acra.gov.sg/announcements/acra-iras-seamless-filing-initiative>, 검색일자: 2023. 11. 28.

- 이를 통해 기업은 90% 이상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차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오류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그림 IV-8] ACRA IRAS Seamless Filing 작동 도식



자료: ACRA, “ACRA 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 <https://www.acra.gov.sg/announcements/acra-iras-seamless-filing-initiative>, 검색일자: 2023. 11. 28.

- 원활한 서류 제출 솔루션을 이용하더라도 싱가포르 기업청 및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상이함
 - 싱가포르 기업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a) 회사의 현재 회계연도 수익이 500,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이며 (b) 회사의 현 회계연도 말 현재 총자산이 500,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이고, (c)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에 거래하기 위한 부채 또는 지분 상품을 발행 또는 상장하는 과정에 있지 않거나 싱가포르 이외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금융 기관이 아닌 경우 원활한 서류 제출 솔루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회사가 (a) C-S 양식을 제출할 자격이 있

어야 하고, (b) 싱가포르달러를 기능 통화 및 표시 통화로 유지하며, (c) 특수 관계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투자지주회사 또는 서비스회사가 아니고, (d) 자회사, 관계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소유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 원활한 서류 제출 솔루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a)의 C-S 양식을 제출할 자격이 있는 회사란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년도 연간 수익이 50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이고, 17%의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얻으며, 당기자본금 또는 결손금, 단체구제금, 투자금 또는 원천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금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함

□ 중소기업은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SMEs Go Digital Program), 디지털 탄력 보너스(Digital Resilience Bonus) 등의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표 IV-5〉 ACRA IRAS Seamless Filing 관련 보조금

보조금 유형	대상	인센티브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	싱가포르에 등록 및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단, IT 솔루션 또는 장비의 구매/리스/구독이 싱가포르에서 사용되어야 함)	최대 80%, ¹⁾ 기업당 연간 30,000싱가포르달러 한도로 중소기업이 최초 프로그램 구매 시 이용 가능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을 처음 사용하는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	최소 18개월 계약 시 최소 6개월 무료 구독
디지털 탄력 보너스	식품 서비스 및 소매 부문의 중소기업	최대 10,000싱가포르달러

주: 1)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정

자료: ACRA, "ACRA 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 <https://www.acra.gov.sg/announcements/acra-iras-seamless-filing-initiative>, 검색일자: 2023. 11. 28.

7. 소결

- 주요국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신고 및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캐나다, 스웨덴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정 업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세무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총 망라하는 특화된 별도의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웹페이지', 캐나다의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 자원 웹페이지', 스웨덴의 '기업을 위한 정부 서비스 협력 페이지'가 이에 해당함
- 캐나다는 '연락 담당관(Liaison Officer)' 서비스, 호주는 '국가 세금 클리닉 프로그램(National Tax Clinic program)' 등을 통해 무상으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과 캐나다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서를 검토하거나 작성을 돕는 신고 도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미국은 '소득세 신고지원 자원봉사(VITA)'와 '노령층 세무 자문(TCE)' 서비스를, 캐나다는 '지역사회 소득세 신고 봉사 프로그램(CVITP)'을 제공함
- 세액 계산을 비롯한 원활한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국가 또한 존재함
 - 미국은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프로그램 서비스(IRS Free File)'를, 싱가포르에는 '신규 기업 자가진단 키트(New Company Start-Up Kit)', 'ACRA-IRAS 세금 신고 솔루션(ACRA 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핀란드는 현장 및 온라인 세미나 등 중소기업 세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상시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강의 역시 마련되어 있음

- 이밖에 스웨덴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팟캐스트 역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핀란드와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뉴스레터 발송이 이루어지기도 함
 - 핀란드는 기업 운영 단계별로 절차상 계획된 뉴스레터를 발송하며, 스웨덴은 일정 주기 간격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함
- 이밖에도 호주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사면 프로그램(Lodgment penalty amnesty program)’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재무적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도 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신고 기한이 지난 일부 세금 관련 신고에 대해 적격 연체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신고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표 IV-6〉 주요 국기별 세정지원 제도 요약

국가	서비스명	지원 내용	지원단계
미국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웹페이지	- IRS 웹사이트 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여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 - ①정보, ②세금 신고 준비, ③세금 신고/납부, ④사업체 소유 단계, ⑤일 반 사안, ⑥온라인 교육의 6개로 구성된 상위 메뉴하에 다양한 하위 메뉴가 존재하며, 하위 메뉴 내에 세부 설명과 관련 링크 및 양식 등이 다 단계로 존재	창업, 운영 (신고 준비), 폐업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프로그램 서비스(IRS Free File)	- 총 조정소득 7만 3천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세금 신고 가이드 및 반응형 세금 신고서가 제공되고 세액 계산과 세금 신고까지 무료로 수행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이용 가능	운영 (신고)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	- 소득세 신고지원 자원봉사(Volunteer Income Tax Assistant, VITA)는 ①연소득 6만달러 이하이거나, ②장애인, ③영어 구사가 어려운 납세자, 노령층 세무 자문(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이하 TCE)은 60세 이상의 납세자의 연금 및 은퇴 관련 세금이 대상 - IRS의 세법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자원봉사자들이 VITA 및 TCE를 통해 작성된 모든 셸프 신고서에 대한 검토 진행	운영 (신고)
	현장 및 온라인 교육	- IRS는 세금 일반 사항부터 기록 보관 및 은퇴 계획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워크숍, 세미나 및 회의와 같은 교육 훈련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 - IRS Video Portal의 Business 카테고리에서 언제든지 주제별로 1~30여 개씩 마련된 무료 동영상 교육 자료 이용 가능	운영 (신고 준비)
캐나다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청 자원 (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웹페이지	- 캐나다 정부 통합 사이트 내에 마련된 중소기업의 납세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페이지 - 미국의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 웹페이지와 유사하게 5개 최 상위 메뉴와 그 하위 메뉴 내 별도의 메뉴 및 링크, 양식 등이 다단계로 구성 - 하위 메뉴 내에서도 가장 자주 이용되는 서비스의 경우 최상위 페이지에 서 바로 접속 가능하게 표시	운영 (신고 준비)

〈표 IV-6〉의 계속

국가	서비스명	지원 내용	지원단계
	연락 담당관(Liaison Officer)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납세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 전화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나, 협회 또는 그룹을 위한 웨비나(webinar)를 제공 - 납세 의무 및 적용 비용 공제, 일반부기 개념 및 모범 사례 소개, 세무 관련 오류 방지 방법 안내, 납세 관련 문의사항 응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 	운영 (신고 준비)
	지역사회 소득세 신고 봉사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족 기준 CAD 35,000(5인 가족 기준 CAD 52,50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주거 불안정자, 원주민, 이주민, 장애인, 학생 및 청소년 등이 대상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직접 방문이나 전화 및 화상회의, 혹은 서면 제출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돕는 세무 클리닉 서비스 	운영 (신고)
호주	국가 세금 클리닉 프로그램 (National Tax Clinic program) 무신고 가산세 사면 프로그램 (Lodgment penalty amnesty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이 일부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여, 조세 관련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격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자선단체에 무료 세금 상담 및 지원을 제공 - 주로 전화나 웹 회의로 진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면 서비스 제공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사이 신고 기한이 지난 소득세 신고서, 사업활동 명세서, 부가 혜택 세금 신고서에 대해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적격 연체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지연 제출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 기존 신고 만기일에 연간 매출액이 1천만달러 미만이며, 순자산이 500만달러 이하인 법인이 대상 	운영 (신고 준비, 신고)
핀란드	신규 기업 지침 모델 (Guidance Model for Newly Started Businesses)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 등록부에 등록된 신규 유한책임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기업은 등록 단계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어 첫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계획된 세무 관련 안내 전화 및 뉴스레터, 웹세미나 등을 제공 - 신고 전 안내 전화, 신고 지연 시 리마인드콜, 빈번한 미신고 시 관리 전화 발신 	운영 (신고 준비)

〈표 IV-6〉의 계속

국가	서비스명	지원 내용	지원단계
스웨덴	기업을 위한 정부 서비스 협력 페이지(Verksamt.se)	- 기업의 창업 및 운영, 폐업 시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들의 안내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링크를 웹사이트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세무행정 에 관련된 사항들 역시 함께 확인 가능	창업, 운영 (신고 준비), 폐업
	뉴스레터 및 팟캐스트 제공	- 중소기업 과제 관련 최신 정보가 담긴 온라인 뉴스레터(TaxInfo)를 1년 에 8회 세무대리인에 발송하고, 새로운 법안과 시기별 뉴스, 기타 알람 사항들을 강조하는 뉴스레터를 매월 중소기업에 발송 - 창업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 정보를 다루는 팟캐스트 제공	운영 (신고 준비)
	신규 기업 자가 진단 키트 (New Company Start-Up Kit)	- 접속 시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면, 싱가포르 국세청 및 기업청과 관련된 주요 제출기한(예상 청구 소득 신고기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차보고서 제출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자가 진단 키트 - 예상 청구 소득 신고 및 법인세 신고의 경우 제출 마감일 한 달 전에 이 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운영 (신고 준비)
싱가포르	ACRA-IRAS 세금 신고 솔루션 (ACRA IRAS Seamless Filing Initiative)	- 중소기업의 기업청 및 국세청 제출 서류 준비와 제출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세청과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협력 개발하여 제공 - 이때 기업청과 국세청의 이용 대상 기준이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수익 기준만 살펴보면 기업청의 경우 현재 회계연도 수익 SGD 500,000 이하, 국세청의 경우 전년도 연간 수익이 SGD 5,000,000 이하가 대상	운영 (신고)

자료: 본문 내용 저자 정리

V. 시사점 및 개선 방안

1. 온라인 세무 교육 지원 강화

- 세무 교육은 세무 당국이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알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세무행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다만 집체교육은 교육 제공자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자에게도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상당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중심의 교육이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IRS Video Portal' 내 Business 항목에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별도의 스크립트까지 제공하여, 강의 전체를 시청하지 않아도 강의 내에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작함
 - 핀란드는 동영상 강의 외에도 일상생활 중 라디오처럼 편하게 반복 청취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활용하기도 함
- 우리나라는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현행 서비스에서는 중소기업 납세자가 필요한 강의를 선별하는 데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 중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강의자료 업데이트 시 내용 안에 북마크를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 강의와 유사한 성격의 국세청의 유튜브 공식 채널 영상 역시 '중소기업 세정지원' 재생 목록을 별도로 생성한다면 중소기업 납세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도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세무조사,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강의를 추가된다면, 중소기업의 세무 업무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미국의 스크립트 제공이나 핀란드의 팟캐스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세금 서비스 제공자 활용

□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방안으로 세무서비스 제공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응답자의 31%가 조세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함

- 특히 종업원 수 50인 이상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 확인 등을 이유로 사실상 세무대리인을 통해 각종 세무문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 중 46%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75%가 조세지원제도를 몰라 조세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 한편 응답자 과반 수 이상이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나 조세지원책 관련 정보를 '세무대리인'(58.8%)으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하여, 다른 경로에 비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세무대리인 등 세무 서비스제공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세무행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음
 - 중앙집권적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맞춤형 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가 있어 정보의 전달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바, 이는 과반 수 이상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정보를 획득하는 현실에서 잘 드러남

- 한편 Rethinking Tax Services: The Changing Role of Tax Service Providers in SME Tax Compliance(OECD)에서는 현재 OECD 회원국의 54개 세무당국이 세무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시함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약 48%가량의 세무당국이 세무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용 전화, 전문가 연결, 납세자 및 세무서비스 제공자와 세무당국의 관계를 관리하는 관리자 설정, 뉴스·정보 게시판 운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표 V-1〉 세무 당국이 세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단위: 건)

세무서비스 제공자 전용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제공	26(48%)
전용 전화 라인 제공	14(26%)
기술 전문가 연결	24(44%)
관계 전문가 설정	15(28%)
뉴스·정보 게시판 제공	31(57%)
기타 제공 서비스	
공식 회의 개최	34(63%)

자료: OECD, *Rethinking Tax Services: The Changing Role of Tax Service Providers in SME Tax Compliance*, 2016, p. 78

- 세무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여 세무서비스 제공자에게 맞춤형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수입 중인 업체와 관련된 세무행정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책에 따른 세금지원의 여부는 사업유형,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부를 포함한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신고 시 국세청에 의해 수집되므로, 매출액과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세무행정이나 세금지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임⁶⁷⁾
-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세무행정 지원보다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세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전용 전화라인을 제공, 기술 전문가 연결 등과 같은 방안이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음
-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규모의 소득세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전용전화 서비스(Dedicated telephone service for income tax service providers, DTS)를 통해 무료 기술지원을 제공함⁶⁸⁾
 - 해당 서비스 대상은 감사, 회계, 세무, 기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회계사, 장부 담당자, 변호사 같은 세무 전문가임
 - 파트너가 50명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세무 전문가는 구속력 있는 사전 해석 서비스(Income tax rulings)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음
 - 세무 서비스제공자는 DTS에 등록한 후 제공된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자는 문의된 문제를 검토한 후 이메일로 유용한 정보와 지침을 송부하는데, 세무 문제의 난해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을 줌

67) 이러한 방안은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달리, 현재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만 해당 정보를 인지하여 관련 정보를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에 포함된 납세자 권익침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21253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등 10인) 참조

68) CRA, "Register for the Dedicated Telephone Servic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ax-professionals/dedicated-telephone-service/register-dedicated-telephone-service.html>, 검색일자: 2023. 12. 27.

[그림 V-1] Dedicated Telephone Service 신청 페이지 I

Government of Canada / Gouvernement du Canada

Franglais

Search CRA

MENU

CRA sign in

Canada.ca > Canada Revenue Agency > Dedicated telephone service for income tax service providers: How to register

Register for the Dedicated Telephone Service

The Canada Revenue Agency's (CRA) Dedicated Telephone Service (DTS) for income tax service providers helps you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to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The DTS is available to small and medium income tax service providers who prepare, or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Canadian income tax returns on behalf of individuals or businesses. Specialized tax professionals who represent large firms (those with more than 50 partners) are not eligible for this service.

Fill out the form below with the required information and click on the Submit button. After registering, the DTS team will contact you by email with their telephone number and your exclusive telephone access code (TAC).

What to know before you register

- The information you enter on this form will not update or change your or your firm/organization's CRA contact information.
- If registering on behalf of a firm/organization, enter the name and email address of an authorized contact person that has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firm/organization.
- Any reference to "I" or "me" and "you" or "your"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applies to the firm/organization as well as to the authorized person.
- All members of the firm/organization who access the DTS are also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below.
- For questions you may have about the DTS or the registration process, you can visit the [service's web page for information](#) or you can send an email to dts-str@cra-arc.gc.ca.

▶ Terms and Conditions of Use

자료: CRA, "Register for the Dedicated Telephone Servic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ax-professionals/dedicated-telephone-service/register-dedicated-telephone-service.html>, 검색일자: 2023. 12. 27.

[그림 V-2] Dedicated Telephone Service 신청 페이지II

* First name (required)

* Last name (required)

* Firm/Organization name (required)

* Profession (required)

CPA

Lawyer

Other

* Number of partners - 0 if not applicable (required)

* Email Address (required)

* Telephone number (required)

* Business address (required)

* City (required)

* Province/Territory (required)

Make your selection...

* Postal Code (required)

자료: CRA, "Register for the Dedicated Telephone Servic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ax-professionals/dedicated-telephone-service/register-dedicated-telephone-service.html>, 검색일자: 2023. 12. 27.

[그림 V-3] Dedicated Telephone Service 신청 페이지III

* How did you first hear about this service? (required)

Make your selection...

Registration for the DTS requires that you review and agree to abide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by ticking all of the boxes below):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by me relating to my registration is true, accurate and complete and that I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using the DTS as outlined above and on the [DTS web page](#).

I agree that the TAC issued to me is for my (or my firm/organization's) use only, and must not be shared with another individual (or shared with anyone outside the registered firm/organization).

I understand that the purpose of the DTS is to direct me to CRA guidance and technical positions that can help answer my interpretive income tax questions, and that DTS officers do not have access to taxpayer accounts and cannot answer question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I understand that DTS officers cannot assist with tax planning or provide tax advice, or otherwise comment on a specific taxpayer's situation.

I understand that the income tax treatment of any specific transaction will only be confirmed by the Income Tax Rulings Directorate in the context of an advance income tax ruling request.

I agree to all [Terms and Conditions of Use](#).

Submit Reset

Did you find what you were looking for? Yes No

Share this page

자료: CRA, "Register for the Dedicated Telephone Servic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ax-professionals/dedicated-telephone-service/register-dedicated-telephone-service.html>, 검색일자: 2023. 12. 27.

-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서비스제공자를 통한 간접적 세정지원 확대는 세무서비스제공자를 이용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비스제공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 세무행정서비스 통합 웹페이지 마련

- 중소기업에 특화된 세무행정서비스 및 이에 대한 부가적 혜택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의 수준에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뉴스레터·안내 메시지 발송, 컨설팅·교육 제공, 세무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등 주로 세무신고·납부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 및 인프라 제공, 상담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는 세무컨설팅서비스 외 국외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서비스 및 혜택의 제공이 확인됨
 - 컨설팅이나 종합지원 제도 안에 압류·매각 유예, 납부기한 유예, 납세담보 면제, 경정청구 우선처리, 과소 신고 가산세 면제,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존재함
 - 아울러 가업승계에 특화된 별도의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함
- 그러나 다양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들이 산재하고 있어,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 납세자의 추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 제도별로 보면 수혜 대상기업의 기준과 지원 사항이 다양하여, 납세자가 혜택의 유형과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
 -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세무 관련 정보 책자를 배부하고 해당 책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제공하지만, 책자 형식의 자료는 납세자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부가적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존재함

-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가 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일부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된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일원화한다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캐나다의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 자원’(CRA resourc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스웨덴의 verksamt.se와 같은 웹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위 세 국가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모두, 중소기업이 필요한 세무행정 정보 및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집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하위 메뉴에 작성된 설명과 관련 링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임
 - 이 중 스웨덴의 경우, 세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운영, 폐업 시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를 아우르는 포털사이트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범정부적 수준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참고사례로 보임
 - 세 국가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모두 텍스트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높은 가독성을 보여줌
- 이상의 주요국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의 산재한 세무행정 지원서비스를 한 사이트에 집약하여 원스톱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바, <표 V-2>와 같은 가상안을 참고 가능한 예시로 제시함
 - 기본적 구조는 중소기업 세정 관련 서비스별로 메뉴를 마련하여, 지원요건 및 혜택사항 등을 요약한 후 기존에 존재하는 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음

〈표 V-2〉 중소기업 세정지원 원스톱 사이트 구성 예시

최상위 메뉴 (첫 페이지)	차상위 메뉴	하위 메뉴 혹은 수록 내용
뉴스 및 공지사항	① SNS 소식	- 국세청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중소기업 세정 관련 콘텐츠를 별도로 링크하는 게시판
	② 공지사항	- 중소기업 세정 관련 국세청 공지사항 게시판
사업체 운영	① 사업자 등록 ② 폐업 ③ 변경 ④ (기타 추가 항목)	- 각 하위 메뉴별로 주요 내용 요약 후 국세청 내 상세 페이지나 홈택스 내 신청 페이지 링크
세금 안내 및 지원	① 신규 사업자 안내 페이지	- 본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신규 창업자 대상 페이지로 관련 내용은 이후 항목에서 서술하며, 별도 마련된 본 페이지 소개 후 링크
	② 컨설팅 지원 서비스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②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③ 혁신성장 세정지원센터 ④ 마을세무사 ⑤ 비즈니스지원단 ※ 메뉴별로 요건 및 혜택 등 각 서비스 약속 후 페이지 링크
	③ (기타 추가 항목)	-
세금 신고 및 납부	① 세무달력 ②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④ (금융 계좌 등) 관련 정보 제출	- 각 세목별로 유의사항, AI 세금신고 사용 방법 안내(부가가치세)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 기재 - 홈택스 내 상세 페이지 혹은 신고 및 제출 버튼 링크
일반 사안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의료보험	- 중소기업 운영자가 알아야 할 정보 발췌 및 요약 - 상세 정보 및 신청 페이지 링크
교육	① 현장 교육 및 워크숍 ② 온라인 교육	- 현행 운영 중인 '납세자 세법 교실' 내 관련 페이지 링크 - 중소기업 세정에 특화된 신규 영상 등록
(기타)	(기타 추가 항목)	-

주: 제시된 안은 원스톱 사이트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해 일부 중소기업 관련 세무행정 서비스를 기재한 것으로, 현행 모든 서비스를 망라하지 않고 있음을 밝힘
 자료: 저자 작성

4. 기타

가. 신규 창업자를 위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 개설

- 싱가포르 국세청이 신규 법인 사업자를 위해 'New Company Start-Up Kit'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신규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를 위해 각종 신고 관련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정보들이 산재되어있어 사업 초기의 납세자 입장에서 각종 신고 의무의 요건 및 기한을 준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할 것을 제안함
 - 신규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은 1회계기간으로 한정함
 - 사업 확장에 따라 각종 원천징수 의무 등 복잡한 신고 의무가 증가할 수 있어, 1회계기간으로 이용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국세청은 내용 누락의 위험 부담 없이 정형화된 내용을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내용은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및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안내, 종합소득세 안내 등 사업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며, 필요하다면 법인 및 일부 업종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안내에 있어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상 사업자등록 후 첫 해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한 사항을 파악·제공하는 등 안내 사항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임
 -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법인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 전문직 종사자 등과 같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창업 시부터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와 같은 일부 납세자들의 이용을 제한하여 서비스를 더욱 간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임

나. 자가진단 세정지원 서비스 검색 기능 제공

- 앞서 제시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통합서비스 웹페이지나 신규 사업자 대상 안내 페이지에 현행 '세금비서' 기능을 차용한 자가진단 세정지원 서비스 검색 기능이 추가된다면, 납세자들 편익이 더욱 증진될 것임
 -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등 납세자 정보만 입력하면 '세금비서' 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 등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 등에서 착안하여, 납세자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세정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각종 컨설팅 서비스 및 혁신성장 세정지원과 같은 지원 기준이 각기 달라 발생하는,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별도로 탐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세금비서' 서비스 시스템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표 V-3>을 통해 예시가 되는 구상안을 제시해 봄
 - 요건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매출액 기준을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첫 입력 정보로 배치하며, '세금비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의 경우 자동 채움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이 확인되면, 이후에는 각 서비스별로 추가적인 요건을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다음 확인 대상 예시로 제시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요건 중 업종과 대표의 선임일 또한 사업자 등록 정보와 대표자명 변경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 채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산 총액의 경우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연계하고, 부동산 공시 가격과 같은 가격 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여도 자산 금액이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음

〈표 V-3〉 자가진단 세정지원 서비스 검색 구상(안)

순서	작성 서식	질의 응답 내용																				
1	사업자 정보 <input type="text" value="오른쪽 입력값 채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text" value="000-00-00000"/>																				
2	<p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자료 구분</th> <th>건수</th> <th>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신용카드</td> <td>80</td> <td>6,989,294,000</td> </tr> <tr> <td>2</td> <td>세금계산서</td> <td>35</td> <td>3,203,023,000</td> </tr> <tr> <td>3</td> <td>현금영수증</td> <td>30</td> <td>2,343,432,000</td> </tr> <tr> <td>5</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구분	건수	매출액	1	신용카드	80	6,989,294,000	2	세금계산서	35	3,203,023,000	3	현금영수증	30	2,343,432,000	5	<p>귀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text" value="수정"/> <input type="text" value="확인"/></p>
	자료 구분	건수	매출액																			
1	신용카드	80	6,989,294,000																			
2	세금계산서	35	3,203,023,000																			
3	현금영수증	30	2,343,432,000																			
5																			
3	<p style="text-align: center;">귀 사업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input type="text" value="링크"/> 지원 대상입니다</p>	<p>이어서 아래 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각 서비스의 <input type="text" value="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미래성장 세정지원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마을세무사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비즈니스지원단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 매출액이 아래 영세납세자 대상 서비스의 기준까지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 서비스까지도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납세자 지원단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표 V-3〉의 계속

순서	작성 서식	질의 응답 내용
4	<p>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확인</p> <p>① 자산 총액 <input type="text" value="오른쪽 입력값 채움"/></p> <p>② 업종 <input type="text" value="사업자 정보에 따른 자동 채움"/></p> <p>③ 대표 선임일 <input type="text" value="사업자 정보에 따른 자동 채움"/></p> <p>④ 가업 승계 여부 <input type="text" value="오른쪽 입력값 채움"/></p>	<p>①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input type="text" value="자산총액"/> 버튼을 눌러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② 사업자 정보에 따른 자동 채움</p> <p>③ 현재 재직 중이신 대표의 선임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③, ④ 중 선택하여 응답) <input type="text" value="수정"/> <input type="text" value="확인"/></p> <p>④ 귀 사업자는 가업을 승계한 후 현재 사후 관리 중에 있습니까?(③, ④ 중 선택하여 응답) <input type="text" value="예"/> <input type="text" value="아니오"/></p>
5	<p>귀 사업자는 자산 총액(5천억원 미만), 대표 재직 연한(5년 이상) 요건 미비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p>	<p>이어서 아래 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각 서비스의 <input type="text" value="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 세정지원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마을세무사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비즈니스지원단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영세납세자 지원단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input type="text" value="안내"/> <input type="text" value="확인"/>
6	(이후 계속)	

주: 본 서비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기 위한 예시로 실제 설계 시에는 보완이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 다만 각 중소기업 세정지원 서비스의 현재의 지원 대상은 그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지나치게 다양한 바, 기준 지표의 종류가 어느 정도 통일되었을 때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액, 수입금액, 소유 재산가액, 자본금, 자산 총액, 업종 등 적용되는 기준 지표가 상이함

- 이에 따라 각 기준별로 금액을 확인하는 응답 양식을 모두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식 설계 시 입력 값이나 단계가 크게 분화되고 늘어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벤치마킹

- 우리나라 중소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벤치마킹하여 영세 납세자들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영세납세자들의 경우 세무서비스 제공자와 정기적인 장부 작성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 대리에 한정하여 신고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고 기간에 한정하여 신고 관련 서비스를 증개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만함
- 현재 영세납세자들의 단편적 신고 대행 서비스에서는 각종 세무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 플랫폼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어,⁶⁹⁾ 국세청에서 세무사회 등 단체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예방·보완할 수 있음
- 현재 자원 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를 비즈니스지원단에 접목시켜 일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세청이 부담하여 세무 자문 등을 지원한다면 국세 행정 효율화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 세무서 창구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자기 신고 원칙의 충실화에 기여하고 간접적 행정비용 절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69) 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삼점삼' 앱 운영 사업자, 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 2023. 6. 28,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19623, 검색일자: 2023. 10. 25.

참고문헌

〈문헌자료〉

김학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Vol. 237, 2016년 3월호, 2016.

박영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국회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022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우수사례집』, 2022.

장성호 외 2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20.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2023.

OECD,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SMEs*, 2023.

OECD, *Rethinking Tax Services*, OECD publishing. 2016.

〈법령 및 규정〉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소득세법」
 「소상공인기본법」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온라인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블로그,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4795084>

납세자권익24,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

보안뉴스, <https://m.boannews.com/html/>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ACRA, <https://www.acra.gov.sg>

ATO, <https://www.ato.gov.au>

EU Commission,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index_en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

IRAS, <https://www.iras.gov.sg>

OECD Data, <https://data.oecd.org>

IRS, <https://www.irs.gov>

IRS Video Portal, <https://www.irsvideos.gov>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https://georgiasbdc.org>

UNSW, <https://www.unsw.edu.au>

Verksamt.se, <https://www.verksamt.se>

중소기업 성실납세를 위한 세정상 지원방안 연구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 행 2023년 12월 31일
저 자 박주철·권순오·박하얀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73-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